



■ 연구보고서 2014-22-1-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김재호 · 전승훈 · 최장훈 · 이선희

【책임연구자】

김재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전승훈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장훈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22-1-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저자 김재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39-00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정가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ISBN 978-89-6827-176-2 93330

발간사 <<

인구고령화 현상은 전 세계적 인구변화 추세로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최근 노후준비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의료과학기술의 발달과 맞물려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다각적 준비가 요구되며, 특히 노후를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후소득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 추이는 노후소득 측면에서 증가한 기대수명만큼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장수리스크를 야기한다. 즉 은퇴 전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사망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노후자산을 준비했다라도, 예상보다 길어진 수명으로 인해 축적된 노후자산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의 급속한 증가와 공적연금의 미성숙 및 사적연금시장의 비활성화로 충분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마련함에 있어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로 정년이전에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비자발적 은퇴 역시 증가하고 있어, 노후준비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현 시점에 있어, 향후 노후소득에 대한 전망 및 노후소득 충분성에 대한 진단은 그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근로기에 노후를 대비해 축적한 노후자산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효용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를 파악하고자, 소득수준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김재호 부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이선희 연구원 및 대구대학교 전승훈 교수, 국민연금연구원 최장훈 부연구위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본 연구진은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주신 본 원의 신화연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장,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목 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이론적 배경	19
제2절 노후소득 관련 연구동향	20
제3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25
제1절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7
제2절 노인가구 경제상태 현황	49
제4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전망	55
제1절 공적연금급여액	57
제2절 자산 소득환산액	68
제3절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 추정	85
제5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충분성	91
제1절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	93
제2절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101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1

참고문헌 117

표 목차

〈표 2- 1〉 노후소득 적정성 관련 연구동향	24
〈표 3- 1〉 세계은행 다층체계	28
〈표 3- 2〉 국민연금가입현황	30
〈표 3- 3〉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망 결과	34
〈표 3- 4〉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계획	34
〈표 3- 5〉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35
〈표 3- 6〉 기초노령연금급여(2013년 기준)	36
〈표 3- 7〉 기초연금 소요재정	37
〈표 3- 8〉 퇴직연금 가입현황(2013년 2/4분기 기준)	38
〈표 3- 9〉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39
〈표 3-10〉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보험 현황	41
〈표 3-11〉 각 연금제도의 비중 (2012년말기준)	41
〈표 3-12〉 연금저축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율 현황	42
〈표 3-13〉 경과연도별 계약유지율	42
〈표 3-14〉 기업규모별 의무시행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43
〈표 3-15〉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2013년)	45
〈표 3-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46
〈표 3-17〉 주택연금 연령별 월지급액 예시	48
〈표 3-18〉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50
〈표 3-19〉 지니계수 및 상대 빈곤율	51
〈표 3-20〉 OECD 34개국의 2000년대 후반 전체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소득비율 ..	52
〈표 4- 1〉 소득함수 추정결과	60
〈표 4- 2〉 공적연금자산 추정결과	64
〈표 4- 3〉 65세 이상 인구가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소득: 연도별 가구특성별	67
〈표 4- 4〉 가구자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을 위한 기초통계	70
〈표 4- 5〉 가구소득 추정결과	71

〈표 4- 6〉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연도 및 가구특성별	73
〈표 4- 7〉 가구순자산 추정결과	74
〈표 4- 8〉 추정자산과 조사자산의 격차	76
〈표 4- 9〉 2010년 기준 추정자산과 조사자산의 가구특성별 격차	77
〈표 4-10〉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순자산: 연도 및 가구특성별	79
〈표 4-11〉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 소득환산 추정액	81
〈표 4-12〉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성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82
〈표 4-13〉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지역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82
〈표 4-14〉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83
〈표 4-15〉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분위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84
〈표 4-16〉 가구소비함수 추정결과	87
〈표 4-17〉 은퇴 후 필요소득 추정결과	90
〈표 5- 1〉 은퇴 후 공적연금의 자산 충분성	94
〈표 5- 2〉 공적연금자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95
〈표 5- 3〉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연도 및 가구특성별	97
〈표 5- 4〉 최저생계비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연도 및 가구특성별	100
〈표 5- 5〉 65세 이상 총 노후소득과 생애소비 기준: 연도별	101
〈표 5- 6〉 65세 이상 가구주의 성별 총 노후소득	102
〈표 5- 7〉 65세 이상 가구주의 지역별 총 노후소득	103
〈표 5- 8〉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령별 총 노후소득	104
〈표 5- 9〉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분위별 총 노후소득	106

그림 목차

[그림 1-1] 단계별 연구방법	15
[그림 2-1] 모달리아니 피라미드(평생소득가설)	20
[그림 3-1]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29
[그림 3-2] 공적연금 가입실태(2013년 12월말 기준)	31
[그림 3-3] 연금종류별 수급자추이	32
[그림 3-4] 국민연금종류별 수급자수 및 제도부양비	33
[그림 3-5] 분기별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 추이	39
[그림 3-6] 주택연금 보증방식	46
[그림 3-7] 주택연금 지급방식	48
[그림 3-8] OECD 국가의 소득구성	53
[그림 4-1]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소득: 연도별	66
[그림 4-2] 65세 이상 고령자의 추정소득과 가구조사소득의 추이 비교	73
[그림 4-3] 추정자산과 실제자산의 추이 비교	76
[그림 4-4] 추정된 자산의 추이	78
[그림 4-5] 65세 기준 성별 기대여명	80
[그림 5-1]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연도별	96
[그림 5-2] 최저생계비 기준 공적연금의 자산충분성: 연도별	99
[그림 5-3] 생애효용 기준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연도별	107
[그림 5-4]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연도별	108
[그림 5-5] 최저생계비 기준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연도별	109
[그림 5-6] 총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연도별	109

Abstract ‹‹

Hyper Aged Society and Retirement inc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based on the lifetime utility level and the lowest cost of living, to figure out whether the retirement assets accumulated in working time can maintain the utility level before retirement, at the moment of entering to hyper-aged society, First, estimating the retirement assets composed of public pension benefits and the income fluidized from net assets accumulated in working time. Second, based on the lifetime consumption function, deriving the optimal retirement income level and the minimum income level required to old age as a measure of adequacy. Third, based on estimated retirement income and the measure of adequacy assets, analyzing the adequacy of retirement income from 2020 until 205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이같이 높은 노인빈곤율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 및 사적연금 시장의 비활성화, 비자발적 은퇴 증가 등의 사회변화에서 기인함.
- 본 연구는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진행되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평생소득가설을 바탕으로 65세까지 축적한 공적연금 및 자산이 은퇴 후 최소·최적소비를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
- 노후소득의 범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가구의 순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함
 -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매우 낮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매우 적은 것을 근거로 함.
 - 분석의 대상은 65세를 기준으로 전체 노인이 아닌 공적연금수급이 가능하고 가구순자산이 존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을 실시함.
 - 첫째, 공적연금급여와 근로기에 축적한 자산을 유동화한 소득의

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합으로 노후자산규모를 추정함.

- 둘째, 생애소비함수를 바탕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적 노후소득을 추정하고 최저생계비를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여 충분성의 기준으로 제시함.
- 셋째, 추정한 노후소득과 적정노후소득을 바탕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심화되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함.

2. 주요 연구결과

□ 국민연금

- 각 개인의 생애연금자산을 계산한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금자산을 합산하여 가구의 연금자산규모를 추정함.
 - 그 결과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20년 38.9만원에서 2045년 65.9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2050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금

- 기초연금 급여의 현재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함.
 -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작아짐.
 - 둘째, 기초연금 급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하

므로, 명목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현재가치화 할 경우 현재가치가 점점 작아지게 됨.

- 2020년 이후 5년 단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소득수준을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 성별, 가구 소득분위별로 측정함.
 - 전체적 변화추이는 성별, 연령별, 소득분위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단, 규모면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 즉,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 성별이 남성일수록, 그리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자산소득환산액

- 2020년부터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순자산을 추정하여 추계된 자산액을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함.
 - 그 결과, 2020년 18,887만원이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30,2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추정된 자산과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남은 기대 생존기간 동안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소득은 2020년 1,576만원이며, 이를 2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전환하면 약 32.8만원에 해당함.
 - 이후 추정값은 가구주의 기대여명에 따라 그 값을 달리함.

□ 공적연금의 충분성

- 공적연금의 생애효용을 유지하는 소비충분율은 2020~2045년 기간에 25%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높아진 후, 그 수준을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자산충분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2020~2045년 기간에 60% 초반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증가한 후,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가구주의 생애효용수준을 기준으로 자산소득환산액을 고려한 총노후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소득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생애소비수준의 49.8%~76.3%를 충족할 수 있으며 2050년에는 88.7%~166.7%의 충분성을 나타냄.
 - 하지만 생애효용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6.4%~68.0%에서 2050년 80.2%~33.1%로 여전히 높은 비율의 가구가 생애효용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
- 최저생계를 기준으로 한 자산충족률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3.5%~168.5%에서 2050년 147.6%~317.3%로 총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60.8%~10.0%에서 2050년 17.1%~0.2%로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3. 결론 및 시사점

- 이상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0년경에는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 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 충족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만, 2040년대 이후에는 기초연금의 역할이 아주 미미함을 발견할 수 있음.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은퇴가구에 대한 공적부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함
 - 둘째, 본 연구의 경우 각각의 개인은 국민연금 급여수급 직전까지 근로활동과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음.
 - 셋째, 미래 노인세대의 급여수준을 줄이는 기초연금제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고령자의 근로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이 형성되어야 함

-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20~2050년까지 현재 근로자들이 65세까지 근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적연금가입기간이 실제 가입기간보다 과다하게 가정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반영하지 않은 공적연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산의 소득환산에 사용된 기대여명의 한계로 5년마다 65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연령별 인구구성의 한계로 추정의 후반기로 갈수록 관측치의 수가 낮아 신뢰도가 다소 낮아지는 한계가 있음

*주요용어: 초고령사회, 공적연금, 자산, 노후소득, 충분성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34개국의 평균 노인빈곤율은 2007년 15.1%에서 2010년 12.8%로 2.3%p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07년 44.6%에서 2011년 47.2%로 2.6%p 증가했으며 이는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수명의 증가와 국민연금제도의 미성숙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시장의 비활성화 등 노후준비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또한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면서 은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 역시 이와 관련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이후,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2007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고 수급시작 연령도 점차 늦춰 2013년~2033년까지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65세로 조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차, 2013년 3차 재정계산 결과에서는 2044년 재정수지 적자 및 2060년 기금고갈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기금재정의 불안정속에서 급여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수급전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의 5%를 지급하고, 2028년까

지 10%로 인상하는 무기여방식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7년 4월 제정되어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빈곤율은 계속 높아져 2014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하위소득 노인 70%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¹⁾

OECD 국가들은 2011년~2013년 동안 강제연금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57.3%에서 54%로 3.3%p 낮아졌지만, 자발적 확정기여까지 포함할 경우 64.4%에서 67.9%로 오히려 3.5% 증가했다. 하지만 자발적 확정기여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연금 평균 소득대체율은 42.1%에서 39.6%로 2.5%p 낮아져 전체적으로 2.5%p 낮아졌다. 이와 같이 OECD 국가들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강제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은 공적연금 급여의 적정성 관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이다.

통계청의 「201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베이비부머가 포함된 중고령자는 전체 인구중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율은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12.7%로 아직은 고령화 사회(ageing society)에 해당하지만, 2020년에는 15.7%로 고령사회(aged society), 2030년에는 24.3%로 초고령사회(hyper aged society), 2050년에는 37.4%로 노인중심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으나 건강

1)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이 지급되는 대상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않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0\text{만원} - 2/3 \times A \text{급여}) + 10\text{만원}$ 이며 이를 통해 계산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10만원, 20만원을 초과할 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단, 위의 산식을 통해 산정된 기초연금액과 국민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그 차액만큼을 채워서 지급한다.

수명의 증가는 평균수명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의 노년기는 질병과 장애로 인한 노인의료비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의 부담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0.8세(남성 77.2세, 여성 84.1세)이고, 2010년 현재 65세 남성은 앞으로 17.2년, 65세 여성은 21.6년을 더 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WHO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²⁾은 2007년 71.0세로 추정되어, 기대수명과 차이를 보인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990년에 2,403억원에서 2013년에 17조5,283억원으로 급증하였고, 전체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 역시 1990년에 8.2%였으나 2013년에는 34.5%를 점유하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통계청, 2014).

급속한 고령화 추이는 노후소득 측면에서 증가한 기대수명만큼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야기한다. 즉 은퇴 전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사망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노후자산을 충분히 준비했다라도, 예상외로 수명이 길어져 축적된 노후자산이 부족하다면 노후에 소비를 줄이거나, 몸이 불편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불충분한 노후소득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은 2000년 29.6%(29.4%), 2005년 30.0%(29.8%), 그리고 2013년 31.4%(30.9%)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4). 하지만 실제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대체로 55세 내외로 추정된다. 따라서 생애 주된 일자리의 퇴직연령이 늘어날 수 있다면, 근로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노후자산 축적이 가능할 것

2) 건강수명(Healthy Life Expectancy)은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둔 지표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에 중점을 두고 산출한 지표임(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이다. 이로 인해 최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등을 통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근로기간을 늘리려는 정책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은퇴 연령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노인들의 경우 정기적 소득은 부족하지만 생애근로를 통해 축적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상당부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역모기지 방식으로 실물자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소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자산은 상품에 따라 유동화에 따른 거래비용이 다르게 발생하더라도 유동화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 매매를 통한 유동화는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역모기지방식을 사용하면 주택을 이용하면서 일정한 노후소득이 발생하므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의 침체와 고령화에 따른 자산 가치 하락 전망으로 유동화 된 소득이 점차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근로기에 노후를 대비하여 축적한 노후자산이 은퇴 후에도 은퇴 전의 효용수준(소비)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소득수준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노후소득(공적연금 및 자산의 소득환산액)의 충분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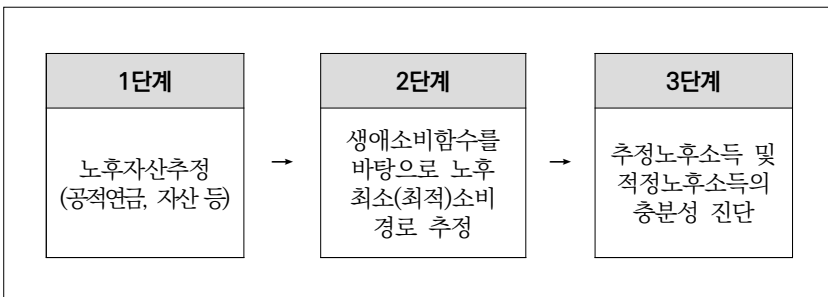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생애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평생소득가설 가정 하에 유도된 소비함수를 바탕으로 은퇴 후 효용수준을 유지하는 최적

소비경로를 추계하여 추정된 노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최적수준의 소비를 유지할 수 있는 소득 대비 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한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최저수준의 노후소득으로 간주하여 최저생계비 대비 노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도출하여 최저수준의 충분성을 살펴볼 것이다.

노후소득의 범위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자산을 유동화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매우 낮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연금의 정책적 목표가 노후의 빈곤상태를 방지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측면이므로 공적연금과 자산의 유동화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공적연금급여(국민연금과 기초연금)와 근로기에 축적한 순자산을 유동화한 소득의 합으로 총 노후소득을 추정한다. 둘째, 생애소비함수를 바탕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최적 노후소득을 추정하여 충분성의 기준을 제시한다. 셋째, 추정된 노후소득과 적정노후소득을 바탕으로 초저출산·초고령화가 심화되는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분석한다.

[그림 1-1] 단계별 연구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배경

제2절 노후소득 관련 연구동향

2

이론적 배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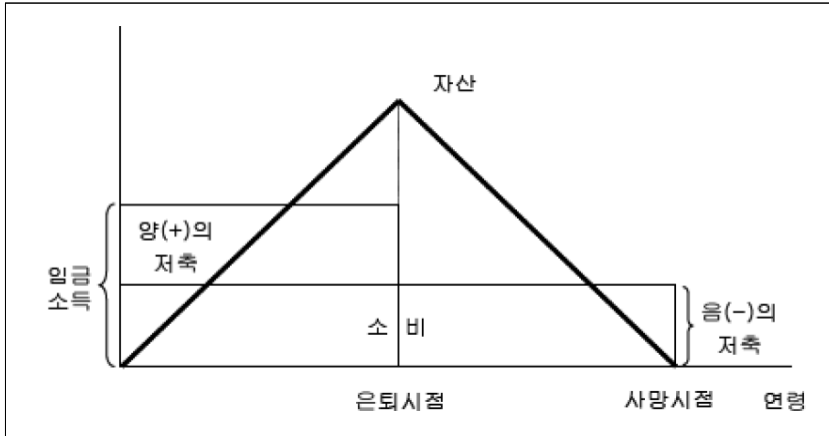
제1절 이론적 배경

Ando and Modigliani(1965)의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에 따르면, 경제주체는 각 시점에 전망된 자신의 기대수명을 바탕으로 현재의 소비를 미래에도 유지하기 위해 일생 동안의 소득을 재분배한다. 즉, 근로기에 소득의 일부만을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여 은퇴시점부터는 축적한 노후자산을 이용하며 사망할 때까지 소비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전기에 예상한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면, 부족한 노후소득으로 인해 생의 남은 기간동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에 직면하게 된다³⁾.

Yaari(1965)는 수명이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상속동기를 갖지 않고 모든 자산을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소득화 한다면 생존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장수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고 소비의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자산을 유동화하여 종신연금의 형태로 갖고 있지 않고 일부만을 종신연금의 형태로 전환하거나 또는 전혀 종신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연금수수끼끼(annuity puzzle)라 칭한다.

3) 이 밖에도 고령화시대의 도래하면서 금융시장의 장기침체로 축적된 자산의 투자수익율이 갑자기 하락하거나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자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축적된 노후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시적 측면의 장수리스크로 볼 수 있다.

[그림 2-1] 모델리애니 피라미드(평생소득가설)



자료: 류건식·이창우·김동겸(200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발췌.

제2절 노후소득 관련 연구동향

현재까지 복지, 경제,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다. 둘째는 은퇴 이후 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소득보장 효과에 대한 연구로 주로 급여의 적정성을 다루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살펴본 연구들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기점으로 구분된다. 2008년 이전의 연구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가 형식적 완비에도 불구하고, 현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지원하기에 역부족임을 지적한다(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김수완, 2007; 이용하, 2008). 국민연금

을 제외한 두 제도의 도입시기를 고려할 때, 2008년 이전의 연구들은 대체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가입유인 마련을 통한 공사연금제도의 상호완충적 역할 수행을 제언했다. 2008년 이후 등장한 연구 역시 종전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 단, 기초노령연금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성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각각의 연구가 내세우는 개선방안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두고 있다. 주요국의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연금개혁방안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한 연구(이용하, 2008; 김용하, 2011; 방하남, 2011)가 진행된 반면, 일부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현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손병돈, 2012; 윤석명, 2013). 이외 연구는 각 개별 제도의 구성 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개편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정경희, 2009; 양재진, 2011; 정유석, 2013).

다음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논의되는 연구주제는 은퇴 이후 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소득보장 적정성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현행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노후소득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들은 은퇴 후 필요한 소득수준과 실제 은퇴를 앞둔 근로자 세대가 은퇴시점까지 축적한 은퇴자산으로 측정된 은퇴 후의 소득수준을 비교한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을 기점으로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적정성과 관련하여 소득대체율을 활용하여 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자들마다 적정성과 충분성에 대한 사용은 혼재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노후소득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여윤경(1999)은 1995년 Survey of Consumer Finances 자료를 사용하여 은퇴 이전 가계를 대상으로 은퇴 자산의 충분성을 분석하였

다. 은퇴 자산의 충분성은 은퇴를 위하여 필요한 자산이 얼마인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전체가구의 52%만이 충분한 은퇴자산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이후 연구에서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를 추정하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독신의 경우 약 30만원, 부부의 경우 약 100만원으로 추정하였다(여윤경, 2002).

한편, 은퇴소비의 개념을 통하여 이를 살펴본 연구는 여윤경(2002), 백은영(200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여윤경(2002)의 연구에서는 부부 및 독신가구에 따라 은퇴 후 월소비액수를 소득구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 보았으며, 조사대상의 58%만이 은퇴자금의 충분성을 보고한다. 백은영(2008) 역시 은퇴 후 소득수준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총 24%의 가계만이 적정함을 보고하고 있다.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지출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노령계층의 소비지출이 근로연령계층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종전 연구와 차이를 둔다.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노령계층의 필요소득수준은 소득계층별로 약간의 차이를 두나 평균 61%로 나타났다.

2007년 국민연금 개정을 기점으로 하여, 이전 시점의 연구들은 대체로 공적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원종욱, 2000; 안중범·전승훈, 2003).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은 상이하나, 대체로 소득대체율의 적정수준을 60~70%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은퇴소득대체율 방식 및 지출 규모에 의거한 산정방식에 따라 은퇴소요자금을 산정하는 연구들(이지영 외, 2009 재인용)이 2007년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은퇴 후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가계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살펴본 연구와 관련하여 석재은(2003)은 노령계층과 근로

계층을 대비하여 필요소득수준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평균 61%의 필요소득수준을 보고한다.

은퇴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을 살펴본 안종범 외(2005)의 연구는 한국 노동패널자료(2~6차)를 이용하여 가계지출함수를 추정하고, 동일가구의 은퇴 전 소득(소비)과 은퇴 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은퇴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대비 66.55%로 추계되었다. 안종범 외(2005)의 연구는 종전 연구들이 비은퇴자 가구의 소득과 은퇴자 가구의 소비를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파악했었던 것과 비교할 때, 차이를 둔다.

다음으로 이지영 외(2009)의 연구는 은퇴자금의 충분성 및 그 영향요인을 객관적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투자자교육재단에서 실시한 은퇴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0세 이상 은퇴자들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3.2%만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관적인 충분성은 25.7%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12.9%의 은퇴자들은 객관적으로 불충분한 은퇴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은퇴자금의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재정 관련 요인 및 은퇴 준비 여부 등이 해당되었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전승훈 외(2009)의 연구는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분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근로자가 은퇴 후 수령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총액이 근로기간 중 소비활동에 근거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충족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중 하나라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평균 59.97%가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보장제도들의 도입시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곧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은퇴 후 소득수준의 불충분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2-1〉 노후소득 적정성 관련 연구동향

구분	여윤경 (1999)	여윤경 (2002)	석재은 (2003)	안종범외 (2005)	이지영외 (2008)	전승훈외 (2009)
연구목적	은퇴자산 충분성	목표소득 대체율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 수준	은퇴가구의 적정소득 대체율	은퇴가구의 은퇴자금 충분성 및 영향요인	필요소득 수준 및 자산충분성 분석
연구대상	비은퇴가구	50세 이상 비은퇴가구 (부부/독신)	65세 이상/ 20~64세 이상	45세 이상 은퇴가구	50세 이상 은퇴가구	은퇴가구
분석자료	SCF(1995) ¹⁾	가구소비 실태조사 (1996)	가구소비 실태조사 (2000)	한국노동 패널 (2~6차)	은퇴자조사 (2007)	한국노동 패널
분석결과	전체의 52% 충분한 은퇴자산 보유	독신가구 약30만원, 부부가구 약100만원	평균 61%의 필요소득 수준추정	은퇴전 소득대비 66.55% 적정수준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우 23.2%	전체의 59.97% 자산충족

주: 1) Survey of Consumer Finances의 약어임.

1990년대 후반 및 2000년대 초반의 경우 공적연금의 적정급여와 맞물려 은퇴 후 노후소득의 적정성이 논의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2000년대 중후반부터 최근의 경우 소득대체율의 관점에서 노후소득의 적정성 및 충분성이 논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정성 및 충분성 파악에 있어 일관된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소득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영위를 위하여 매우 유용하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논의된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적정성을 분석함으로써 고령화 진행에 따른 각 연도의 제도변화와 시기별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제3장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현황

제1절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제2절 노인가구 경제상태 현황

3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 현황

제1절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일반적으로 다층노후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란 고령화로 인한 연금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후소득 재원을 다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적연금의 기능을 축소하고 사적 연금을 강화하여 노후소득재원의 기능을 다각화함으로써 공적연금 재정의 지속성과 관련된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국가마다 조금씩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오던 형태로 World Bank(1994)는 「Averting the Old Age Crisis」에서 1층은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연금, 2층은 강제적 적립방식의 연금, 그리고 3층은 임의적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구조의 다층노후소득 보장제도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2005년 기존의 3층구조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로 5층모형을 「Old Age Income Support in 21st Century」에서 제시하였다(World Bank, 2005).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는 국민연금(1988), 개인연금(1994) 그리고 퇴직연금제도(2005)가 도입되면서 명실상부한 3층구조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마련했으며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2000), 기초(노령)연금제도(2008)⁴⁾의 도입으로 확장되었다.

4) 2014년 5월 2일 『기초연금법제정안』이 통과되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되고 7월부터 소득인정액 하위70%까지 최대 월 20만원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표 3-1〉 세계은행 다층체계

층	대상집단			주요기준			우리나라 사례
	빈곤층	비공식부분	공식부분	특징	가입	재원	
0	O	△	X	- '기초연금' 또는 '사회수당형 연금 (social pension)', 최소한의 공적부조방식 - 보편적 또는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운영	보편적 또는 잔여적	정부예산 또는 일반재정	기초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	-	O	- 공적부분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DB 또는 NDC)	강제	보험료, 일부적립금(금융자산)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2			O	-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제도(완전적립식 DB 또는 적립식 DC)	강제	금융자산	퇴직금/퇴직연금
3	X	O	O	- 직역연금 또는 개인연금제도(부분/완전적립식 DB 또는 적립식 DC)	임의	금융자산	개인연금
4	O	O	△	- 비공식적지원(가족), 기타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의료보장), 기타 개인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주택소유)	임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	사적이전/의료급여/저축

주: 중요도 큰 순서대로 O, △, X로 표기함.

자료: The World Bank(2005). Old Age Income Support in 21st Century; 김수완 외(2005).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p.8 재인용.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의 틀에서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노후소득원은 적용대상과 정부의 책임정도(층)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먼저, 0층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⁵⁾은 저소득층 노인의 대표적인 소득원으로 근로기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된다. 1층의 국민연금은 피용자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공적연

5)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금이고 직역연금은 공무원·사학교직원·군인·우체국직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노후소득원이다. 2층과 3층의 퇴직연금·개인연금은 사적연금으로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자영자와 공무원·사학교직원·군인·우체국 직원은 개인연금을 통해 윤택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1층의 공적연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지만,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만 준강제적으로 적용된다⁶⁾.

[그림 3-1]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소득원		피용자	자영자	공무원, 사학교직원, 군인, 우체국직원
자산소득 및 주택 및 역모기지활용	5층			
사적근로, 사적이전소득 등	4층			
추가보장 (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		직역연금
	2층	퇴직연금		
1차 안전망 (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최종	0층	기초(노령)연금		
(빈곤선)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료: 강성호, 이지은(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국민연금연구원 p.40 재인용.

1.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으로 구성된다.

6) 2014년 8월 27일에 발표된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여 2022년에는 전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수지역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960년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1963년에 군인연금, 1975년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992년에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도입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443만3천명의 가입자로 시작되었다. 이후 1995년에는 농어민까지 확대하면서 가입자수가 1,626만2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1999년까지 도시지역 거주자로 확대된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다 2006년 전 사업장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2013년 현재 2,074만5천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표 3-2〉 국민연금가입현황

(단위: 명)

연도	총가입자수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소계	소득 신고자	납부 예외자		
1988	4,432,695	4,431,039	-	-	-	1,370	286
1995	7,496,623	5,541,966	1,890,187	1,650,958	239,229	48,710	15,760
1999	16,261,889	5,238,149	10,822,302	5,309,735	5,512,567	32,868	168,570
2001	16,277,826	5,951,918	10,180,111	5,704,389	4,475,722	29,982	115,815
2002	16,498,932	6,288,014	10,004,789	5,754,340	4,250,449	26,899	179,230
2003	17,181,778	6,958,794	9,964,234	5,399,355	4,564,879	23,983	234,767
2004	17,070,217	7,580,649	9,412,566	4,729,503	4,683,063	21,752	55,250
2005	17,124,449	7,950,493	9,123,675	4,489,216	4,634,459	26,568	23,713
2006	17,739,939	8,604,823	9,086,368	4,150,416	4,935,952	26,991	21,757
2007	18,266,742	9,149,209	9,063,143	3,956,340	5,106,803	27,242	27,148
2008	18,335,409	9,493,444	8,781,483	3,755,980	5,025,503	27,614	32,868
2009	18,623,845	9,866,681	8,679,861	3,627,597	5,052,264	36,368	40,935
2010	19,228,875	10,414,780	8,674,492	3,574,709	5,099,783	90,222	49,381
2011	19,885,911	10,976,501	8,675,430	3,775,873	4,899,557	171,134	62,846
2012	20,329,060	11,464,198	8,568,396	3,903,217	4,665,179	207,890	88,576
2013	20,744,780	11,935,759	8,514,434	3,938,993	4,578,447	177,569	117,018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하지만 2013년 말 현재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는 총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공적연금 비적용자, 납부예외자, 장기체납자로 구성된 적용사각지대 1,656만2천명(50.2%)을 제외한 1,641만명(49.8%)으로 이 중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는 1,499만8천명이고 특수지역연금 가입자는 142만2천명에 이른다. 이처럼 국민연금 제도는 18~59세 총인구에 해당하는 전국민의 일차적 사회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후 25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범위한 적용제외 제도로 실제 가입율은 49.8%수준에 머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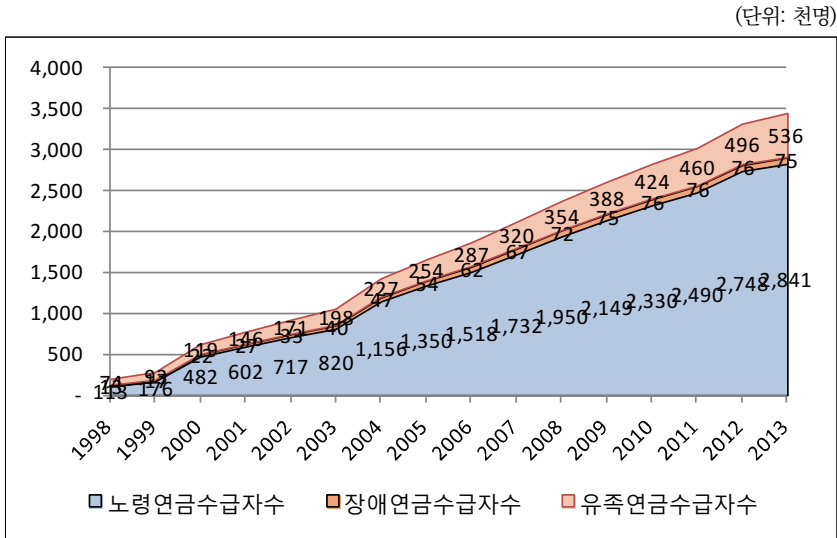
[그림 3-2] 공적연금 가입실태(2013년 12월말 기준)

18~59세 총인구 32,972천명 (100%)						
비경제 활동인구 10,345천명	경제활동인구 22,627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77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0,050천명				특수지역 연금 1,422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628천명			소득신고자 16,053천명	
		납부예외자 4,575천명	장기체납자 1,065천명	보험료 납부자 14,988천명		
					적용사각지대 16,562천명 (50.2%)	
31.4%	1.7%	13.9%	3.2%	45.5%	4.3%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2013 생생통계.

국민연금수급자는 1988년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12월말 현재, 약 365만명 정도(일시금 지급대상 제외)로 추산된다. 이 중 노령연금수급자수는 284만1천명, 장애연금수급자는 7만 5천명 그리고 유족연금수급자수는 53만6천명으로 2013년 말 기준 장애 및 노령연금수급자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유족연금수급자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3-3] 연금종류별 수급자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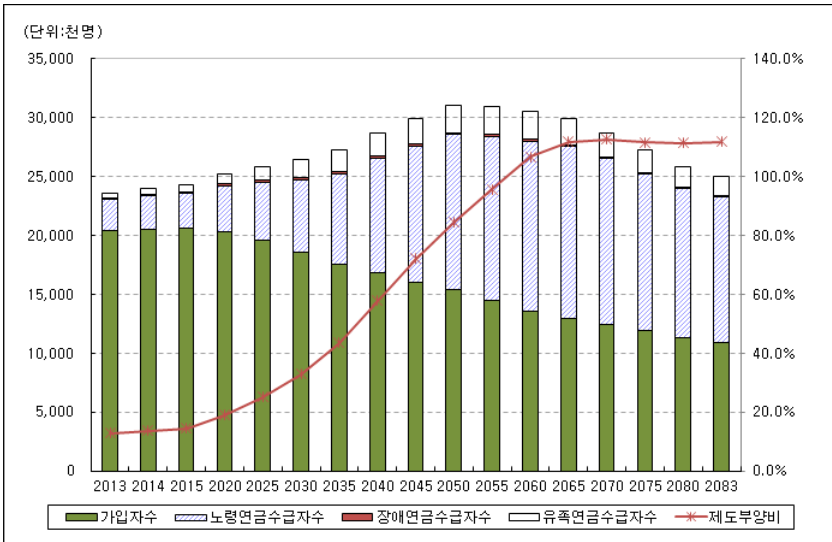
주: 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제외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연금 수급액은 제도도입의 역사가 짧아 가입기간 역시 길지 않은 상황으로, 연금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지급액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노령연금지급이 시작되었으며, 2013년 기준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체 31만3,620원, 노령연금은 32만3,230원으로 특례를 제외했을 경우 각각 40만7,380원, 47만8,340원에 해당한다. 한편, 장애연금은 41만9,790원, 유족연금은 24만8,590원이다.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연금수급자는 2015년 2,062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83년에는 1,100만명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고령화의 진전 및 현재까지 증가한 가입자가 수급

자로 전환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3년에 최고 1,460만명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지급율은 2013년 29.0%에서 점차 증가하여 2060년에는 78.6%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국민연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도부양비는 제도 초기 단계인 2013년 13.0%에서 2068년 11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4] 국민연금종류별 지급자수 및 제도부양비



자료: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발표」, 2013.

이처럼 낮은 급여수준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때부터 지적되어 온 저 부담-고급여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재정안정성 문제로, 2060년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전망되면서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였다.

3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표 3-3〉 국민연금 재정 추계 전망 결과

구분	최대적립금	수지적자	적립금 보유기간
제3차	2043년(2,561조원) 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제2차	" (2,465조원, 2005년 불변가격 1,056조원)	"	" (△214조원)

주: 수지적자=총수입(보험료 수입+기금투자 수익) < 총지출(연금급여 지출 등)이 되는 시점
 자료: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발표」, 2013.

〈표 3-4〉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조정계획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
~1952년생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65세	60세

주: 2011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급개시연령기준이 적용연도에서 출생연도로 변경됨.

국민연금공단은 제3차 재정계산을 통해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2083년)를 기준으로 적립배율 2배 달성을 위해서 12.91%, 수지적자 미발생을 위해서 14.11%, 일정 적립배율 유지를 위해서 15.85%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도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13~14%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등 향후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표 3-5) 국민연금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단위: %)

구분	제정목표			
	적립배율2배	적립배율5배	수지적자 미발생	일정적립배율유지
보험료율	12.91	13.48	14.11	15.85

주: 일정적립배율은 2063~2083년 기간동안 적립배율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됨을 의미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 2013.

2. 기초(노령)연금제도

1988년 연금제도 도입이전 노후를 맞이한 고령자들은 국민연금이 가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가입을 했더라도 납부기간이 짧아 연금지급액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⁷⁾. 이에 2007년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기초노령연금을 실시하여,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고령자들에게도 연금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기초노령연금액은 2008년 1월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월별 소득인정액⁸⁾을 산출하여 하위 60%에 대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작되었다. 당해 7월에 본 제도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까지 확대되었다.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의 5% 기준으로 책정되며, 2028년까지 A값의 1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에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을 수급하고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7) 1927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현재 86세)은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에 이미 60세를 넘어 국민연금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그 이후 출생하더라도 1938년 이전에 출생한 노인(75세)은 전 국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확대된 1999년에 60세를 넘어 국민연금가입이 일부밖에 이루어지지 못해 국민연금가입의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8) 월별 소득인정액은 대상자의 금융·부동산 등 재산과 근로 및 연금소득 등을 합산

20% 감액)이 지급되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지급했다.

〈표 3-6〉 기초노령연금급여(2013년 기준)

구분	2013. 1~2013. 3	2013. 4 ~ 2013.12
노인단독가구	월 20,000원 ~ 94,600원	월 20,000원 ~ 96,800원
노인부부가구 중 1인 수급	월 20,000원 ~ 94,600원	월 20,000원 ~ 96,800원
노인부부가구 중 2인 수급	월 40,000원 ~ 151,400원	월 40,000원 ~ 154,900원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10.30 기준 인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도입 첫 해인 200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507만 명의 57.2%에 해당하는 290만 명에 달했으며, 이 중 13.9%에 해당하는 약 40만명이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하였다. 2012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598만명의 65.8%에 해당하는 393만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6.0%에 해당하는 약 102만 명이 국민연금과 동시에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전히 노인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재정지속성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고 노인의 빈곤 완화 및 후세대 부담경감을 통한 세대간 형평성 증진을 목적으로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7월부터 지급되었다. 현세대 노인의 심각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의 하위 70% 중 90%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즉, 기초연금 급여를 국민연금 월급여가 30만원 이하인 수급자에 한해서 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30~40만원인 수급자에게는 16만원을 지급하도록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하여 지급하게 된다⁹⁾. 이를 통해 2014년 7

월 기준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중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40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소요될 재원은 2015년 기준 10.33조원이며, 이는 기존 기초노령연금 6.12조원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2040년에는 기초연금이 100.03조원, 기초노령연금이 111.63조원으로 역전되고, 2060년에는 기초연금이 228.83조원, 기초노령연금이 263.77조원으로 그 차이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소득가입자의 평균 월소득액(A)에 연동하는데 반해 기초연금은 물가상승율에 연동되는 것과 관련된다.

〈표 3-7〉 기초연금 소요재정

(단위: 조원)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	2040년	2060년
기초노령연금	6.12	7.14	8.38	...	111.63	263.77
당초정부안	10.25	10.86	11.44	...	99.83	227.98
최종절충안	10.33	10.95	11.54	...	100.03	228.83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014. 10.30 기준 인출)

3.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연금제도

가. 퇴직연금제도

2005년 12월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9)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하며 5년마다 보정된다.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DC),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등을 총칭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후 일정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졌다. 퇴직연금제도는 현재 개인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사적연금수단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법적인 규제와 세제혜택¹⁰⁾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준공적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개인연금과는 차이가 있다.

퇴직연금 가입현황은 2013년 2/4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45.0%인 4,574천명이 가입했으나, 2014년 동기에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50.7%인 526만명이 가입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확정급여형(DB)을 선택한 비율은 2013년 65.3%에서 2014년 60.7%로 감소하고, 확정기여형(DC)을 선택한 비율은 32.6%에서 37.7%로 증가해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아직은 안정적인 DB형을 선호하지만 DC형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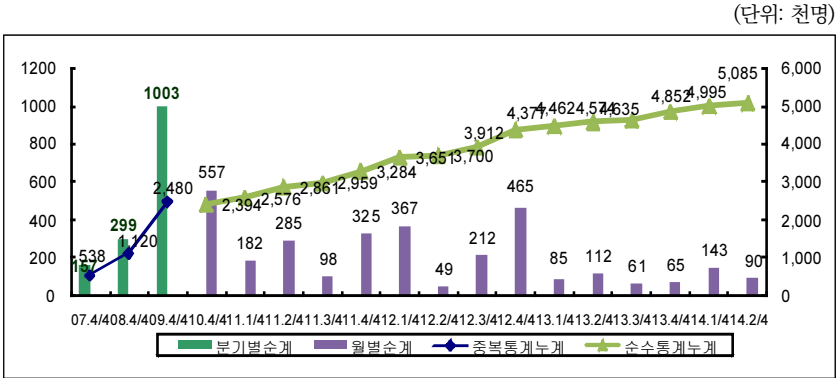
〈표 3-8〉 퇴직연금 가입현황(2013년 2/4분기 기준)

(단위: 천명, %)				
시 기	합 계	DB형	DC형	IRP 특례
2013년 2/4분기	4,574(100.0)	2,890(65.3)	1,591(32.6)	93(2.1)
2014년 2/4분기	5,260(100.0)	3,192(60.7)	1,982(37.7)	86(1.6)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4. 10.30 기준 인출)

10) 퇴직연금은 2006년 2월 세법개정을 통해 퇴직금의 사회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손금한도를 축소하였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2009년까지 임원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로 축소하였으며 2010년(30%), 2011년(25%), 2012년(20%), 2013년(15%), 2014년(10%), 2015년(5%), 그리고 2013년에는 손금산입되지 못한다.

[그림 3-5] 분기별 퇴직연금 가입자 증가 추이



주: DB 가입자 수의 경우, 복수계약 체결로 인한 중복가입자를 '10.5월 이전에는 중복수치로, 2010.6월부터는 순수통계로 작성한 수치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4. 10.30 기준 인출)

또한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10인 미만은 전체사업장수 대비 11.1%, 10~29인은 38.3%, 30~99인은 44.9%, 100~299인은 56.7%, 300~499인은 67.4%,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85.5%로 총 15.6%만이 가입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가입률이 저조하다.

<표 3-9>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10인 미만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합 계
(A)도입 사업장수	159,044	69,799	24,943	6,454	990	1,143	262,373
(B)전체 사업장수	1,435,703	182,026	55,552	11,390	1,468	1,337	1,687,476
도입비율 (A/B,%)	11.1	38.3	44.9	56.7	67.4	85.5	15.6

주: 300인 이상(대기업) 도입률은 76.0%, 300인 미만(중소기업)의 도입률은 15.5%이며, 2010. 7 월부터 사업장 통계는 퇴직연금사업자 계약건수로 집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2014. 10.30 기준 인출)

최근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면서, 사업자의 용이한 관리와 근로자의 높은 수익을 위해 확정기여형(DC)과 개인퇴직연금(IR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¹¹⁾.

그러나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가입과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용 및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는 1년간 근로를 전제로 1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퇴직금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1년 이상 상시고용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의 단기계약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나. 개인연금

금융위원회(2013)에 따르면, 개인연금¹²⁾ 가입자는 약 850만 명으로 이는 20~60세 인구의 약 30%에 해당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약 400만 명, 비적격연금 가입자는 약 550만 명, 이 중 약 100만 명은 중복 가입자로 추정된다. 적격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저축은 2012년 12월 기준 79조, 비적격인 개인연금은 137조로 총 216조에 달하며 이는 공사 전체 연금 적립금의 약 31.9%를 차지한다.

11) 공단은 자산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업선된 운용상품을 6개 내외로 선정하여 제공하며, 만일 가입자가 가입시 제공된 운용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이 보장되는 고금리 예금상품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한 공단 자체적으로 가입 및 부담금선정, 운용 및 지급지시전달, 가입자교육의 운용관리업무를 담당하며 부담금수령 및 보관, 급여지급같은 자산관리업무는 보험회사 1개소와 은행 1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12)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한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생보사가 판매하는 비적격연금(소득공제 없고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 비과세)이 해당한다.

〈표 3-10〉 연금저축 및 개인연금보험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9.12		2010.12		2011.12		2012.12	
	적립금	증감률	적립금	증감률	적립금	증감률	적립금	구성비
연금저축 ¹⁾ (세제적격)	519,186	596,140	14.8	681,587	14.3	788,117	15.6	11.6
개인연금 ²⁾ (세제비적격)	838,690	983,796	17.3	1,089,511	10.7	1,371,723	25.9	20.3

주: 1) 은행, 증권, 보험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2)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보험사의 일반 연금보험, 변액연금
자료: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재인용.

〈표 3-11〉 각 연금제도의 비중 (2012년말기준)

(단위: 조원)

구 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총계
			연금저축	비적격연금	
적립금	392.0	69.2	216.0	78.8	677.2
비중(%)	57.9	10.2	31.9	11.6	100.0

자료: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총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28%로 OECD 평균인 16% 보다 높아 자영업자들에게는 개인연금이 퇴직연금 대신 노후보장 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후설계·개인연금에 대한 정보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개인 스스로 노후를 설계해 연금에 가입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연금보험은 예·적금에 비해 초기 수수료가 높고 상품설명 및 가입절차가 복잡하다. 이는 우리나라 연금보험이 보험설계사를 통해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이들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에 수수료를 제하고 투자된 적립금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 가입유인이 매우 낮은 편이다.

42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표 3-12〉 연금저축의 적립금 대비 수수료를 현황

(단위: %)

	1차년	5차년	10차년	15차년	20차년	25차년	30차년
생명보험	11.12	2.07	0.51	0.14	0.11	0.09	0.07
손해보험	13.97	2.61	0.61	0.10	0.10	0.10	0.10
은행	0.77	1.19	0.92	0.81	0.81	0.81	0.81
자산운용	0.78	1.21	1.26	1.24	1.24	1.24	1.24

자료: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재인용.

한편, 연금저축의 10년후 가입 유지율은 52.4%로 개인연금을 실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연금은 도입이후 가입율과 유지율이 낮고, 개인연금 가입의 유인 수단으로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표 3-13〉 경과연도별 계약유지율

(단위: %)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5차년	10차년
평 균	95.5	86	80.2	72.4	52.4

자료: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재인용.

그 결과 우리나라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20%(보험연구원 추정)로 OECD등 국제기구 권고비율인 40%에 미치지 못한다. GDP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OECD평균 33.9%에 비해 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다. 사적연금활성화대책

정부는 2013년 「개인연금활성화 정책」을 발표하고 2014년 8월 27일에는 퇴직연금 중심의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활성화 대책의 기본방향은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 가입·운용·수령의 모든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입확대를 위해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며, 2022년에는 전사 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표 3-14〉 기업규모별 의무시행 일정(상시근로자수 기준)

기한	2016.1.1.	2017.1.1.	2018.1.1.
대상 사업장	500인 이상	500~300인	300~100인

자료: 금융위원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재인용.

이 밖에 신설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금제도 설정 의제규정을 삭제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근로자의 추가 납입을 확대(임시직 근로자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보험료 4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12%)와 더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 추가납입액에 대해 300만원의 세액공제(12%)를 신설할 방침이다. 운용 단계에서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단순화하고 경직적인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즉, 총 위험자산 투자 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금형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신설과 함께 투자원칙보고서(IPS)¹³⁾를 작성토록 의무화하였다. 수령단계에서는 퇴직연

금 가입 확대 및 자산운용 탄력성 제고와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투자위험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사적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를 위해 운용수수료를 할인하고 담보대출 활성화 및 세금부담 완화 등 퇴직연금 유도를 위한 과세체계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적연금활성화 대책」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사적연금의 도입 확대와 유지율 증대, 그리고 운용의 투명성 확보 등으로 사적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저금리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수익률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의 책임부담이 증가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충분한 노후자산을 축적하지 못해 노후소득보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개인연금의 경우 노후소득을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연말정산의 절세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과 특히 고소득자의 가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사적연금활성화는 노후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최소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서조차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간 노후준비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후소득의 양극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

13) 투자원칙 보고서(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는 자산운용체계,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자산배분, 성과평가 등을 담은 보고서

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고리가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다양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노후소득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소득보장수단들이 대부분 필요시마다 도입되었기 때문에 적용대상에 따라 제도들 간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적절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해 높은 노인 빈곤율을 초래하였다. 결국 빈곤에 처한 노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 201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수급자는 29.9%에 해당하는 37만 6천명으로 2008년 26.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중에 스스로 준비한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15〉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2013년)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A)	572,168	974,231	1,260,315	1,546,339	1,832,582	2,118,566	2,404,650
타 원액(B)	103,715	176,595	228,453	280,310	332,167	384,025	435,882
현금급여기준 (C=A-B)	468,453	797,6361	1,031,862	1,266,089	1,500,315	1,734,541	1,968,768
주거급여액(D)	90,636	154,327	199,645	244,963	290,281	335,599	380,917
생계급여액 (E=C-D)	377,817	643,309	832,217	1,021,126	1,210,034	1,398,942	1,587,851

주: 1)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 가구: 2,690,734원)
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34,226원씩 증가(8인 가구: 2,202,994원)

〈표 3-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65세 이상)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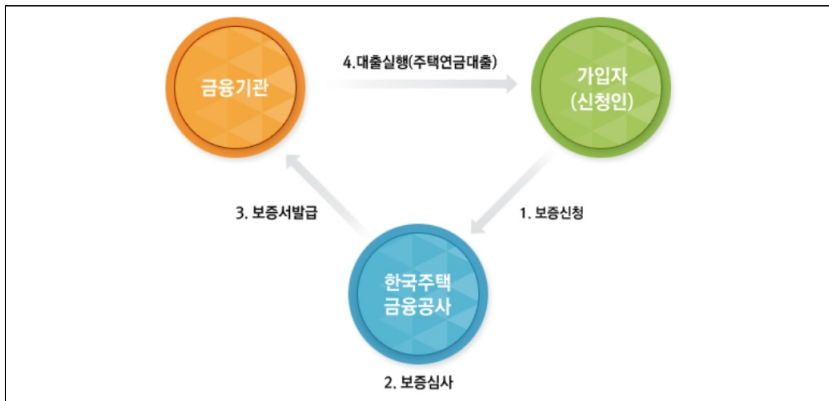
구분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수급자	구분		
			구성비(%)	남자	여자
2008	1,444,010	382,050	26.5	100,772	281,278
2009	1,482,719	387,847	26.2	104,014	283,833
2010	1,458,198	391,214	26.8	106,723	284,491
2011	1,379,865	378,411	27.4	104,901	273,510
2012	1,300,499	376,098	28.9	107,156	268,942
2013	1,258,582	376,112	29.9	110,189	265,923

주: 1) 구성비=(65세 이상 수급자/총 수급자)×100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 각 연도.

5.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론이다. 이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그림 3-6] 주택연금 보증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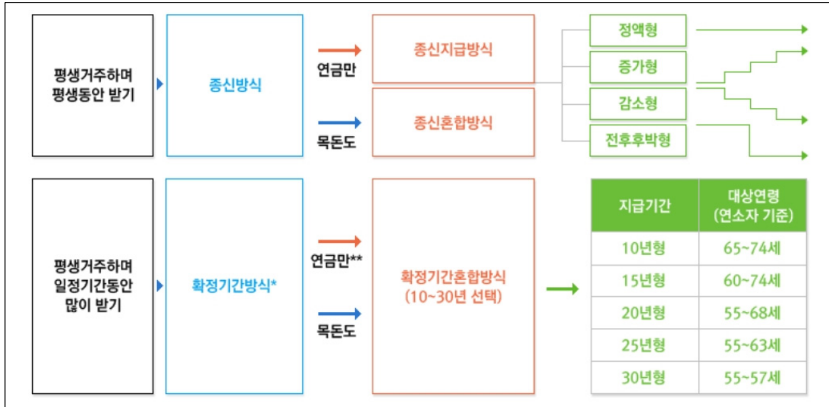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의 장점은 첫째,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준다. 둘째,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셋째,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한 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할 수 있고, 만일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저당권설정시 등록세(설정금액의 0.2%), 교육세(등록세액의 20%), 농어촌 특별세(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권 매입의무(설정금액의 1%)가 면제되고 이용시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가 이루어지며 재산세도 25% 감면된다. 단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가 25% 감면되지만, 5억원 초과인 경우 5억원에 해당되는 재산세액만 25% 감면된다.

대상에 있어, 주택소유자는 만 60세이상(부부 공동으로 주택 소유시 연장마만 만 60세 이상)으로 부부기준 1주택만을 소유하고(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는 3년 이내 비거주주택 처분조건부로 가입가능) 대상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노인복지주택이어야 한다.

지급방식은 월지급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확정기간방식으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지급방식과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흡합방식이 있다. 확정기간방식에서도 수시인출 한도 설정후 나머지부분을 원지급금으로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확정기간혼합방식이 있다.

[그림 3-7] 주택연금 지급방식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연금지급액은 종신지급방식(정액형기준)의 경우 관련비용을 제외하고 65세는 일반주택일 경우 주택시가가 3억원일 때는 82만2천원, 6억원일 때는 199만 8천원을 매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한편 동연령에서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시가 3억원일 때는 65만4천원, 6억원일 때는 130만9천원을 매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대여명이 줄기 때문에 월지급되는 급여액은 높아진다.

<표 3-17> 주택연금 연령별 월지급액 예시

(단위: 천원)

연령	주택가격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3억원	6억원	3억원	6억원
60세		685	1,370	527	1,054
65세		822	1,645	654	1,309
70세		999	1,998	823	1,647
75세		1,236	2,473	1,053	2,107
80세		1,565	3,130	1,377	2,755

주: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2014.1.1. 기준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그러나 고령화에 따라 기대여명의 증가, 금리 및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주택연금 월지급액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정액보증형으로 운영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공적보증기관의 보증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 주택연금 지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금리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주택가격평가와 장기예측방법을 도입하여 보증기관의 예측력을 향상시키며 월지급액을 2~3년 주기로 조정함으로써 보증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박덕배, 2014).

제2절 노인가구 경제상태 현황

2013년 공적연금¹⁴⁾을 받는 고령자는 전체 고령인구 중 67.7%에 해당하는 415만 명에 이른다.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자수는 2001년 국민연금 95만5,803천명, 공무원연금 16만721천명, 군인연금 5만7,380천명 그리고 사학연금 1만 4,639천명이 수급하였으나, 2013년에는 국민연금 365만 3,113천명, 공무원연금 36만6,482천명, 군인연금 8만2,313천명 그리고 사학연금 4만8,407천명으로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14)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며 본 연구에서의 수급자는 연금과 일시금수급자를 모두 포함한다.

〈표 3-18〉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2001	955,803	160,721	57,380	14,639
2002	1,059,365	169,915	59,061	16,059
2003	1,177,378	181,726	60,892	17,900
2004	1,541,630	195,310	62,679	20,017
2005	1,766,589	218,006	64,557	22,206
2006	1,995,984	236,274	66,030	24,706
2007	2,256,912	255,565	68,044	27,816
2008	2,534,114	279,766	70,259	31,325
2009	2,787,091	293,096	72,934	34,137
2010	2,975,336	311,429	75,677	37,381
2011	3,166,983	326,509	78,103	40,576
2012	3,310,211	348,493	80,262	44,357
2013	3,653,113	366,482	82,313	48,407

주: 수급자는 연금수급자와 일시금 수급자를 포함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군인연금관리공단 「군인연금 주요통계도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선진국의 고령자들과 달리 매우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자간 소득분포 불평등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중으로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1%로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06년 42.8%에서 2013까지 5.3%p가 증가한 바 있다. 특히 높은 빈곤율과 함께 지속적으로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와 함께 소득불평등도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2013년 고령자 지니계수는 0.420으로 전체 0.30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9〉 지니계수 및 상대 빈곤율

(단위: %)

구분	지니계수			상대 빈곤율 ¹⁾		
	전체	근로연령인구 (18~65세)	고령인구 (65세이상)	전체	근로연령인구 (18~65세)	고령인구 (65세이상)
2006	0.306	0.295	0.390	14.3	11.1	42.8
2007	0.312	0.299	0.397	14.8	11.1	43.6
2008	0.314	0.300	0.403	15.2	11.5	44.1
2009	0.314	0.300	0.404	15.3	11.5	45.9
2010	0.310	0.297	0.411	14.9	11.3	46.3
2011	0.311	0.294	0.420	15.2	10.8	47.6
2012	0.307	0.287	0.433	14.6	10.0	47.2
2013	0.302	0.280	0.420	14.6	9.6	48.1

주: 1) 전국가구(1인 및 농가포함)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농가경제조사」 각 연도.

전체인구 소득대비 노인의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만5,685\$로 OECD 평균 2만1,480\$의 73.1%인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63.0%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반영하고 있다. 고령자동계에 따르면, 201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4%이며, 고용률은 30.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의 비율은 16.3%로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 증가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은 20.8%로 이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재원마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성숙도가 낮아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52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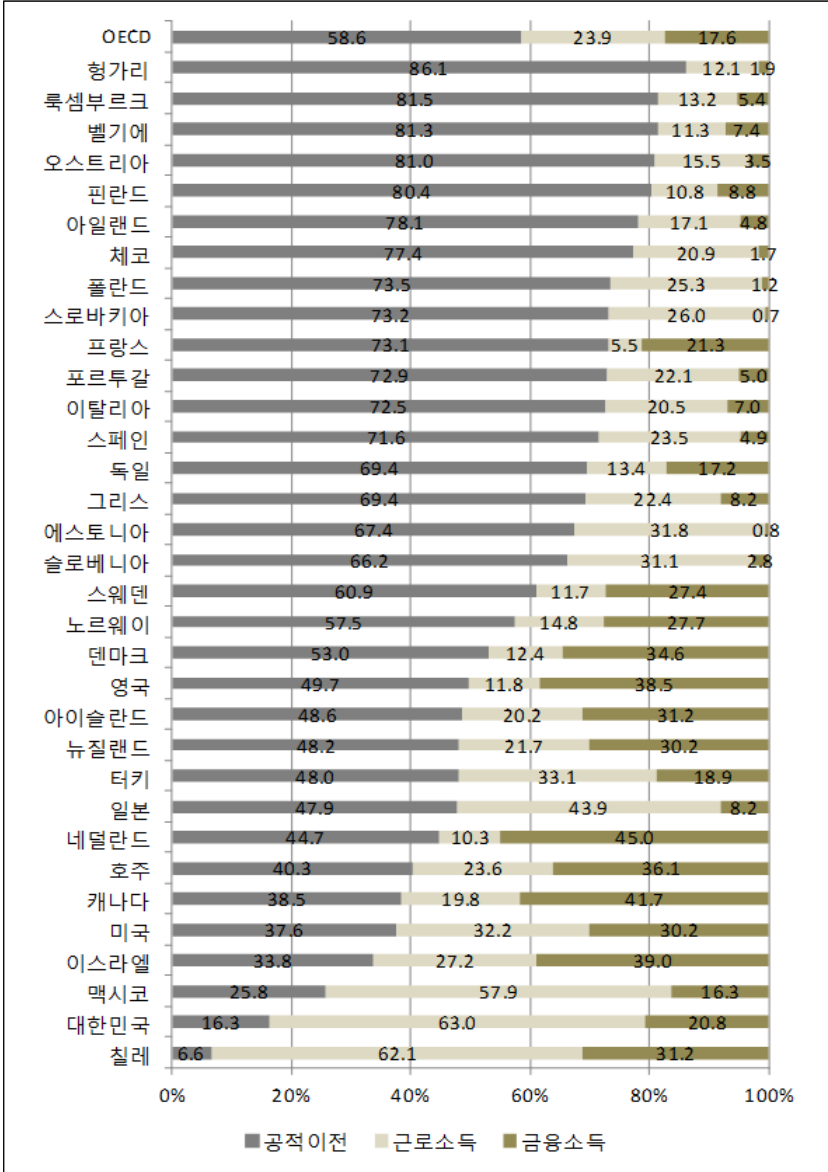
〈표 3-20〉 OECD 34개국의 2000년대 후반 전체소득 대비 65세 이상 노인소득비율

국가	65세 이상 노인소득비율	고령자 평균소득 (USD, PP)	국가	65세 이상 노인소득비율	고령자 평균소득 (USD, PPP)
호주	65.4	21,622	대한민국	62.4	15,685
오스트리아	91.3	28,258	룩셈부르크	99.9	43,761
벨기에	77.1	21,180	멕시코	95.8	7,088
캐나다	93.3	31,690	네덜란드	88.6	26,353
칠레	84.8	12,354	뉴질랜드	86.2	24,048
체코	79.8	13,362	노르웨이	85.3	32,083
덴마크	74.3	23,004	폴란드	87.5	12,653
에스토니아	74.5	10,135	포르투갈	90.8	16,591
핀란드	79.5	22,440	슬로바키아	82.1	12,742
프랑스	97.2	27,652	슬로베니아	85.9	19,169
독일	85.4	24,790	스페인	86.1	19,098
그리스	84.4	16,418	스웨덴	83.2	22,860
헝가리	89.8	10,239	스위스	76.9	30,275
아이슬란드	92.8	26,435	터키	94.9	10,886
아일랜드	82.0	25,225	영국	81.2	24,170
이스라엘	95.8	19,507	미국	92.2	32,821
이탈리아	93.3	23,306			
일본	87.7	22,404	OECD (34)	86.2	21,480

주: 대한민국은 65~74세의 전기노인만의 소득비율로 7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이 반영된다면 이보다도 더 낮을 수 있음.

자료: Pension at Glance 2013, OECD.

[그림 3-8] OECD 국가의 소득구성



자료: Pension at Glance 2013, OECD.



제4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전망

제1절 공적연금급여액

제2절 자산 소득환산액

제3절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 추정

4

초고령사회 노후소득전망 <<

제1절 공적연금급여액

1. 공적연금 자산 추정방법

가. 국민연금¹⁵⁾

국민연금 자산은 은퇴 이전 생애소득을 추정한 후, 국민연금 급여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국민연금 자산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추정된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개인소득합수를 추정하여 그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애소득 경로를 추정한다. 이때 개인의 소득활동 시작 연령은 ‘개인 자료’ 또는 ‘직업력 자료’에 나타나 있는 실제 연령이며, 개인의 은퇴시점은 국민연금급여 수급 직전년도로 가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을 바탕으로 추정된 생애소득은 소득활동 시작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연도별 소득의 총합이 된다. 둘째, 국민연금 가입시점 및 가입연령은 국민연금도입시점(1988년, 자영자의 경우 1999년)과 소득활동 시작 연령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수급시점은 연령에 따라 60~65세로 가정하였다. 이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60세였던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매 5년 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¹⁶⁾. 사망시점은 남녀간 평균수명을

15) 본 연구에서는 전승훈·강성호·임병인(2009)에서 사용한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16) 본 연구에서는 노령연금으로 정의하고 연금수급시점을 1953년~56년생은 61세, 1957년~60년생은 62세, 1961년~64년생은 63세, 1965년~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연금을 수급한다는 것으로 가정한다.

고려하여 통계청의 기대여명자료를 활용하였다. 셋째, 노령연금 대상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10년 미만 일시금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급여수준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1999년 이전은 70%, 1999년~2007년까지는 60%, 2008년에는 50%, 2009년 이후는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까지 4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였다. 다섯째, 2010년 이전에는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이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상하한선만 유지하고 등급체계가 없는 기준소득월액 체계를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이었으며, 2010년 7월 이후는 A값 변동률에 따라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13년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은 389만원이다. 여섯째, 연금 수령기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 등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할인율은 명목임금증가율을 적용하였다.

생애소득의 추계를 위해서는 소득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승훈·강성호·임병인(2009)과 동일하게 King and Dicks-Mireaux (1982), Kazaroian(1997)과 Jurges(2001)에 기초하여 김상호(2007)에서 구축된 모형을 사용한다.

$$W_{it} = \mu + x_{it}\beta + v_i + e_{it} \quad (1)$$

W_{it} : 개인 i 의 t 연령 年임금(로그를 취함)

μ : 상수항

x_{it} : 개인 i 의 시간적으로 변화 가능한 t 연령의 독립변수(time-varying regressors),

v_i : 개별근로자효과(unobservable individual-specific residual),

e_{it} : 오차항

식 (1)에서 종속변수 W_{it} 는 i 가 t 시점에서의 임금(또는 사업소득)수준이며, 독립변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부분과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구성되며 벡터변수이다. 시간의 경과로 변화되는 독립변수는 연령, 연령의 제곱¹⁷⁾, 경제활동 상태, 지역더미(dummy) 및 가구주 여부 더미(dummy)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별근로자 효과를 나타내는 독립변수인 v_i 는 근로자마다 서로 다르지만 각각의 근로자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효과를 통해 성(gender), 교육기간 등과 같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김상호, 2007).

한편 이상의 소득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5차 개인 자료이다. 한국노동패널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은퇴시기까지의 생애소득경로 등을 추정하는데 적합하다. 또한 개인의 임금, 비임금소득에 대한 자료 및 가구소득, 소비, 자산 등에 대해 조사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부가조사로 이루어진 은퇴, 건강, 직업력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개인 자료 중 2012년 기준 27~59세 개인 자료 및 이들의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은퇴 후 공적연금자산 및 필요소득수준을 추정한다.

소득함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추정되었으며, 추정결과는 <표 4-1>과 같다.

17) 연령에 따른 임금함수의 모양은 일정 연령대를 정점으로 하여 감소하는 곡선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의 제곱항을 포함시켜 추정한다.

〈표 4-1〉 소득함수 추정결과

구분	개인소득함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0.8010	0.0639***
(가구주) 연령	0.1435	0.0026***
(가구주) 연령자승	-0.0010	0.0000***
(가구주) 교육연수	0.0087	0.0030***
(가구주) 배우자 유무(유=1)	0.0372	0.0077***
가구주 더미 (가구주 =1)	0.0435	0.0088***
임금근로자더미 (임금근로자=1)	-0.1146	0.0065***
지역더미(광역시도=1)	0.0102	0.0092
건강상태 (나쁨 =1)	-0.0957	0.00825***
조정 R^2	0.7442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재분석

소득함수 추정결과를 이용하면 조사기간인 1998~2010년 이외 소득 즉, 1998년 이전의 소득과 2010년 이후의 미래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추정되면 개인의 소득활동 기간을 이용하여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 산식에 의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결정되고 개인의 기대여명을 고려해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생애연금소득(연금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은퇴 이후의 국민연금 자산 추정은 국민연금 급여산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급여산식은 (2)와 같다. 가입자 (i)가 은퇴시점(R)에서 받게 되는 최초 기본연금액 (P_{iR})은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수준(A , B)과 보험료납부이력(n)에 따라 결정된다.

$$P_{iR} = [2.4p_1 \times (A + 0.75B) + (1.8p_2 + 1.5p_3 + \alpha p_4) \times (A + B)] \times (1 + 0.05n) \quad (2)$$

단,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α : 2009년부터 매년 소득대체율을 0.5%p씩 줄여, 2028년에 40%로 맞추기 위한 조정계수

p_1 : 총가입기간 중 88.1.~'99.03 가입기간 비율(%)

p_2 : 총가입기간 중 99.4.~'07.12 가입기간 비율(%)

p_3 : 총가입기간 중 08.1.~'08.12 가입기간 비율(%)

p_4 : 총가입기간 중 09.1.이후 가입기간 비율(%)

n : 20년 초과연수

기본연금액에 대해 식 (2)와 같이 매년 물가상승률(p_j)과 할인율(γ_j)을 적용하면, 현재시점(2010년) 불변가치로 생애연금액을 구할 수 있다.

$$P_i = \sum_{t=R}^D P_{iR} \times \prod_{j=R}^t (1 + p_j) / \prod_{j=h+1}^t (1 + \gamma_j) \quad (3)$$

단, P_{iR} : 은퇴시점(R)에서의 연금액,

p_j : 일정시점(j)에서의 물가상승률

나.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자산추정은 제도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기초연금의 급여는 기준연금과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급여에 의해 조정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제도 도입 시점(2014년)의 기준연금은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서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의 급여(A 급여) 2/3를 기초로 산정된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100보다 작은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법에서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변화되, 5년에 한 번 기준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만큼 변화되, 5년에 한번 명목임금증가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수급개시연령은 65세이며, 소득수준과 자산수준 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을 고려하여 각 연도별 기준연금액 및 각 개인의 A급여수준,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계산한 후, 이를 기초로 기초연금액을 계산하였다. 또한 국민연금급여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연금액만큼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부부가 수령할 경우 급여의 80%만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2. 공적연금 자산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개인의 생애연금자산규모를 계산한 후,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금자산을 합산하여 가구의 연금자산규모를 추정하였다. 국민연금 자산 추정 결과 생애연금자산은 1억 2,809만원으로 계산되었다. 기초연금자산은 2,192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국민연금자산과 기초연금 자산을 더하면 평균 1억 4,315만원으로 계산되었다. 이상의 금액을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국민연금은 60.7만원, 기초연금은 9.8만원, 그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계는 평균 67.4만원으로 추정

된다.¹⁸⁾

가구특성별로 공적연금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자산은 1억 925만원, 기초연금이 2,875만원이고, 가구주 연령이 50세 미만인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 자산은 1억 3,467만원, 기초연금은 1,856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자산은 적고, 생애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의 국민연금 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고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가구주 연령이 50세 이상인 가구의 국민연금 자산과 50세 미만 가구의 국민연금 자산 대비 비중은 생애급여 기준 81%이고, 월평균 급여 기준 66%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월평균 급여수준의 격차보다는 생애급여 수준의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연금 개시연령이 점차 늦어지기 때문이다. 2010년 기준으로 58~59세는 60세, 54~57세는 61세, 50~53세는 62세, 46~49세는 63세, 42~45세는 64세, 41세 이하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한편 고연령층일수록 기초연금 급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의 연동구조와 할인율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연금이 증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경우 명목임금증가율을 할인율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초연금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게 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일수록 국민연금 자산과 기초연금 자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연금급여가 더 많은 것은 은퇴 전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비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국민연금 급여 비중은 생애기준 87%,

18)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들의 평균을 추정한 것이다.

월평균 기준 73%이다. 이처럼 월평균급여수준의 격차보다는 생애급여 수준의 격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기대여명이 길어,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국민연금 급여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기초연금의 월평균 급여가 더 많은 것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 때문이다. 가구주가 남성일 경우 상대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하여,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급여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연금급여는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소득 상위 30%는 가정에 따라 기초연금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표 4-2〉 공적연금자산 추정결과

(단위: 천원)

구분	국민연금		기초연금		합계	
	생애	월평균	생애	월평균	생애	월평균
전체가구	128,087	607	21,923	98	143,148	674
가구주연령						
50세 미만	134,665	666	18,555	87	146,183	720
50세 이상	109,249	437	28,752	119	134,458	542
가구주 성별						
남성	130,409	629	22,086	100	145,220	697
여성	113,125	460	21,038	83	129,800	525
소득분위						
1분위	71,432	285	21,682	94	93,114	380
2분위	99,181	431	21,206	96	120,387	528
3분위	112,244	511	23,635	104	135,879	616
4분위	121,046	571	22,839	102	143,884	672
5분위	130,220	613	22,436	98	152,657	711
6분위	125,684	609	20,889	94	146,573	703
7분위	138,059	675	20,658	93	158,716	768
8분위	133,084	661	0	0	133,084	661
9분위	151,173	741	0	0	151,173	741
10분위	178,825	855	0	0	178,825	855

자료: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재분석.

향후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도별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공적연금 수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그림 4-1]에서는 2020년 이후 5년 단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소득수준을 측정하였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20년 38.9만원에서 2045년 65.9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2050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정시점까지 국민연금 급여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연금 수급자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 역시 낮아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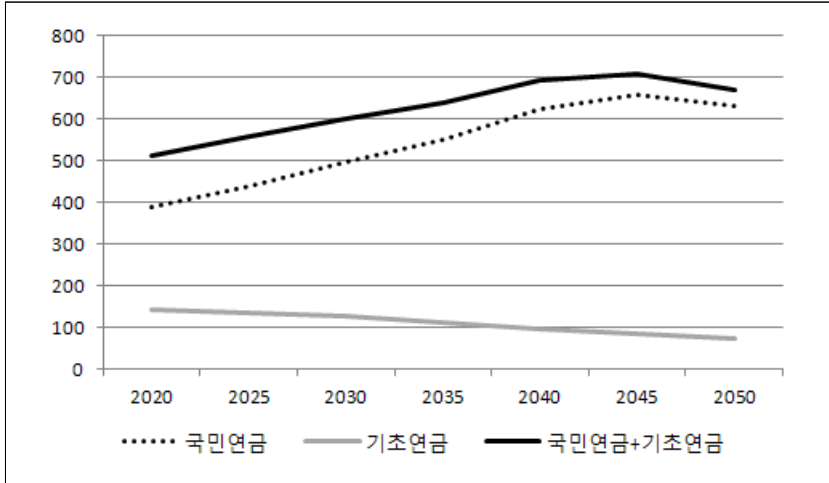
만일 2012년 기준 연령이 27세보다 낮은 신규연령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도별 표본의 가구원 수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2045년 이후에도 월평균급여 수준이 2045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향후 노인가구의 월평균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45년 전후까지 상승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급여의 현재가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다.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작아지게 된다. 둘째, 기초연금 급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명목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현재가치화 할 경우 현재가치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

한편 이상의 분석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소득에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은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현재의 노인세대에게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근로세대에게는 크게 유리하지 않은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4-1]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소득: 연도별

(단위: 천원)



아래 표는 2020년 이후 5년 단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소득수준을 가구주 연령별, 가구주 성별, 가구 소득분위별로 측정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적 변화추이는 성별, 연령별, 소득분 위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단, 규모면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주 성별이 남성일수록, 그리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공적연금 월평균 급여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3〉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소득: 연도별 가구특성별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국민 연금	전체	389	439	498	539	609	653	632
	연령							
	50세미만	-		613	655	660	668	632
	50세이상	389	439	419	386	324	171	-
	성별							
	남성	413	468	525	579	665	695	654
	여성	239	246	292	355	412	498	542
	소득분위							
	1분위	246	252	256	271	263	301	353
	2분위	318	359	392	432	442	455	458
	3분위	425	439	465	487	547	536	514
	4분위	408	485	544	563	596	573	522
	5분위	382	500	591	629	660	607	522
	6분위	483	516	561	599	652	616	554
7분위	441	532	636	708	729	680	608	
8분위	642	615	581	633	692	681	613	
9분위	487	515	660	721	782	794	708	
10분위	543	625	663	737	861	918	868	
기초 연금	전체	143	136	124	112	97	81	72
	연령							
	50세미만	-	-	115	107	97	83	72
	50세이상	143	136	132	117	96	72	-
	성별							
	남성	144	139	130	115	101	86	74
	여성	137	117	102	91	82	75	67
	소득분위							
	1분위	138	119	104	92	80	73	65
	2분위	146	131	114	99	85	74	65
	3분위	141	146	134	115	96	76	66
	4분위	140	137	136	121	103	82	70
	5분위	143	139	137	119	103	85	71
	6분위	148	141	130	117	105	88	75
7분위	148	147	129	118	107	94	80	
8분위	0	0	0	0	0	0	0	
9분위	0	0	0	0	0	0	0	
10분위	0	0	0	0	0	0	0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합계	전체	514	558	597	624	697	702	669
	연령							
	50세미만	-	-	707	736	726	717	669
	50세이상	514	558	534	489	411	241	-
	성별							
	남성	536	588	633	669	733	742	689
	여성	375	361	392	442	483	556	590
	소득분위							
	1분위	385	371	360	363	344	373	418
	2분위	465	490	507	531	526	529	524
	3분위	566	585	599	602	643	612	580
	4분위	547	622	680	684	699	655	592
	5분위	525	639	729	749	762	692	593
	6분위	631	657	691	716	756	703	628
7분위	589	678	765	826	835	774	687	
8분위	642	615	581	633	692	681	613	
9분위	487	515	660	721	782	794	708	
10분위	543	625	663	737	861	918	868	

자료: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재분석.

제2절 자산 소득환산액

1. 가구 자산 추정

가. 자산 추정 가정

자산 소득환산액은 각 기에 생애 전기간에 걸쳐 축적된 순자산을 남은 기대여명동안 현금으로 유동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가구자산함수와 가구소득함수 추정을 위해 공적연금추정에 사용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자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 2차(1998년)~15차(2011년)의 가구순자산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구의 순자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먼저, 분석단위는 가구단위로 자산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순자산을 의미한다. 둘째, 자산의 소득환산액 추정 시, 자산의 규모는 65세 이상 가구주의 각 연령별 순자산을 사용하여 연령별, 성별 기대여명에 따른 월소득액을 추정했다. 기대여명은 2010년 기준이며, 각 세별 장기추계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의 2010년 이후 2050년까지의 5세별 장기추계를 보간법을 사용해 매년 각 세별로 보정하여 사용했다. 셋째, 시간에 따른 코호트의 자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추정 방정식에 시기더미 변수를 포함하였으며, 추정된 자산과 소득은 공적연금과 동일하게 2010년 시점의 현가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넷째, 추정에 사용한 변수들 중 성, 교육수준, 배우자 여부 등은 가구주에 대한 사항으로 이 값들은 향후에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으나 은퇴 여부는 65세가 넘으면 은퇴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나. 자산 추정모형

자산 추정은 강성호·이지은(2010)의 연구와 유사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즉 분석에 활용한 통계모형은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의 패널회귀모형 그리고 일반회귀모형에 대해서 각각의 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ln A_{it} = \alpha_i + \beta_1 sex_i + \beta_2 age_{it} + \beta_3 age_{it}^2 + \beta_4 \ln y_{it} + \Gamma X_{it} + \epsilon_{it} \quad (1)$$

$\ln A_{it}$: i 가구 t 기 가구주순자산의 자연로그

sex_i : 가구주 성더미

age_{it} : 가구주 연령, age_{it}^2 : 가구주 연령 제곱/100

$\ln y_{it}$: i 가구의 t 기 경상소득의 자연대수,

X_{it} : 기타 설명변수 벡터(교육연수, 가구원수, 주택소유여부(소유=1), 지역더미(서울, 광역=1), 경제활동여부(활동=1), 배우자 유무(존재=1), 추세치(1~14))

종속변수는 순자산으로 자연로그형태를 사용하였고, 설명변수는 성별, 연령, 연령의 제곱, 경상소득의 자연로그, 그리고 기타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순자산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가구주가 남성인 비율이 81%, 가구주 연령은 평균 50.54세, 교육연수는 평균 10.8년,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74.1%, 평균가구원수는 3.12명, 주택이 자가인 비율은 59.6%, 서울 또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비율은 50.9%, 현재 근로상태인 비율은 73.3%, 경상소득은 연평균 3,527만원, 순자산은 평균 12,896만원이다.

<표 4-4> 가구자산의 소득환산액 추정을 위한 기초통계

설명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가구주성별(남=1)	0.81	0.39	-	-
가구주연령	50.54	14.50	15	97
가구주학력	10.81	4.47	-	-
배우자유무(유=1)	0.74	0.44	-	-
가구원수	3.12	1.35	1	10
주택(소유=1)	0.60	0.49	-	-
거주지(시도=1)	0.51	0.50	-	-
근로여부(근로=1)	0.73	0.44	-	-
경상소득	3,526	3,715	0	154,840
순자산	12,896	27,919	-608,857	1,620,000

주: 한국노동패널의 1차~15차의 평균값
자료: 한국노동패널 원자료 재분석

자산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래 소득의 추정이 필요하다. 소득함수도 자산함수와 유사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가구자산 추정에 사용되는 소득은 가구소득으로 공적연금추정에 필요한 개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ln Y_{it} = \alpha_i + \beta_1 sex_i + \beta_2 age_{it} + \beta_3 age_{it}^2 + \Gamma X_{it} + \epsilon_{it} \quad (2)$$

$\ln Y_{it}$: i가구의 t기 가구소득의 자연로그

sex_i : 가구주 성터미

age_{it} : 가구주 연령, age_{it}^2 : 가구주 연령 제곱

X_{it} : 기타 설명변수 벡터(교육연수, 가구원수, 주택소유여부(소유=1), 지역터미(서울, 광역=1), 경제활동여부(활동=1), 배우자 유무(존재=1), 추세치(1~15))

소득함수도 자산함수와 마찬가지로 자연로그를 사용하였고,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와 패널회귀분석과 일반회귀모형에 관한 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한 세 가지 모형에 대해 LM test 및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어 동 모형의 계수를 이용하여 생애 가구소득을 추정하였다. 가구소득 추정결과, 배우자가 존재할수록,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서울 또는 광역시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상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가구소득 추정결과

변수	FEM	REM	OLS
	Coef (S.E)	Coef (S.E)	Coef (S.E)
가구주성별(남=1)		0.0412** (0.0164)	-0.0231** (0.0101)
가구주연령	0.0151 (0.0173)	0.0251*** (0.00207)	0.0287*** (0.00150)
가구주연령2	-0.0241*** (0.00275)	-0.0286*** (0.00198)	-0.0323*** (0.00144)
가구주학력	-0.00808 (0.00531)	0.0571*** (0.00162)	0.0606*** (0.000846)
배우자유무(유=1)	0.0506*** (0.0167)	0.158*** (0.0128)	0.198*** (0.00993)
가구원수	0.148*** (0.00422)	0.163*** (0.00351)	0.184*** (0.00279)
주택(소유=1)	0.00807 (0.00824)	0.0634*** (0.00724)	0.172*** (0.00631)

변수	FEM	REM	OLS
	Coef (S.E)	Coef (S.E)	Coef (S.E)
거주지역 (서울, 광역시=1)	0.0524*** (0.0158)	0.0652*** (0.00947)	0.0654*** (0.00572)
경제활동(근로=1)	0.475*** (0.00905)	0.487*** (0.00823)	0.488*** (0.00779)
추세치	0.0765*** (0.0172)	0.0694*** (0.000748)	0.0673*** (0.000720)
상수	6.139*** (0.733)	4.872*** (0.0541)	4.687*** (0.0377)
관측치수	64,346	64,346	64,346
R-squared	within = 0.1871 between = 0.4617 overall = 0.3789	within = 0.1827 between = 0.5832 overall = 0.4711	R-squ=0.4756 Adj R-squ=0.4755

주: 1) *, **, ***는 각각 10%, 50%, 1%에서 유의함.

2) 종속변수는 ln(가구경상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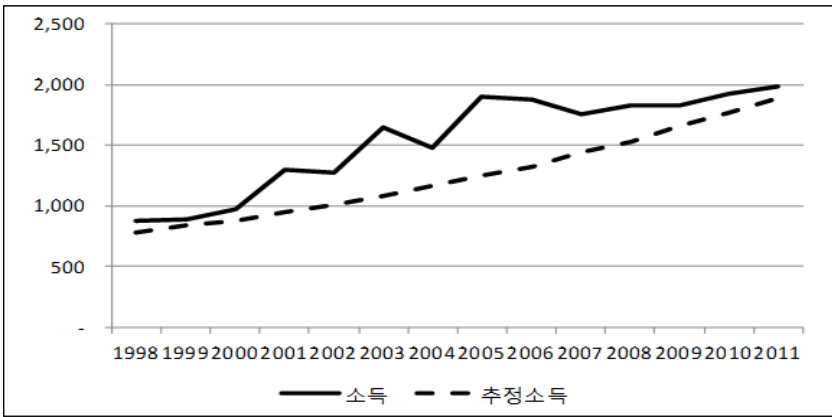
소득추정결과 1998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가구조사소득은 경상가로 875만원이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증가추세를 보인 후 감소추세를 나타내며 2011년에는 1,987만원으로 조사됐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추정소득은 1998년 779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1,894만원으로 조사소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4-2 참조).

2010년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여 추정한 가구소득은 2020년 4,292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11억원을 나타냈다. 특성별로는 남성가구주 소득이 여성가구주 소득의 2배에서 1.3배로 축소되었다. 한편, 도시 거주자의 가구소득은 농촌 거주자와 비교하여 1.2배에서 1.0배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2020년에는 65~69세가 평균 5,29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40년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어, 2050년에는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은 가구소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베이비부머와 같은 특정 출생코호트가 포함되면서 소득분포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위별 소득을 살펴보면 2020년 1분위 소득이 1,934만원에서

2050년 6억4,314만원으로 증가하고,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는 2020년 7,729만원에서 2050년 15억 7,864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4-6 참조).

[그림 4-2] 65세 이상 고령자의 추정소득과 가구조사소득의 추이 비교

(단위: 만원(경상가))



〈표 4-6〉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소득: 연도 및 가구특성별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체	4,292	8,188	15,071	26,614	45,040	71,698	110,865
성별							
여성	2,566	4,782	8,794	16,412	31,119	54,588	89,567
남성	5,096	9,388	16,827	28,869	47,896	75,529	116,140
지역							
농촌	3,878	7,591	14,478	25,950	44,097	70,365	108,717
도시	4,768	8,817	15,709	27,368	46,135	73,241	113,333
연령							
65~69	5,290	10,080	18,173	29,683	46,175	64,437	78,079
70~74	4,584	8,483	16,163	29,142	47,599	74,045	103,330
75~79	3,753	7,351	13,603	25,919	46,731	76,328	118,737
80세이상	2,064	4,590	10,266	20,184	39,473	70,528	119,134

7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소득분위							
1분위	1,934	3,765	7,185	13,555	24,629	41,081	64,314
2분위	3,023	5,983	11,422	21,116	37,668	60,452	90,328
3분위	4,087	7,896	14,925	27,355	46,268	73,229	113,242
4분위	5,192	10,037	18,312	31,552	52,375	82,765	128,760
5분위	7,229	13,270	23,547	39,660	64,350	101,128	157,864
관측치	1,852	2,081	2,223	2,403	2,561	2,427	2,136

이상에서 추정된 2050년까지의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가구순자산을 추정
 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세 가지 모형에 대해 LM test 및 hausman
 test 결과,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어 동 모형의 계수
 를 이용하여 생애 가구자산을 추정했다. 자산의 크기는 연령이 높을수록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존재할수록, 가구원수
 가 많을수록, 거주지가 도시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세가 유의하게 양의 부호를 나타내
 매년 순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표 4-7〉 가구순자산 추정결과

변수	FEM	REM	OLS
	Coef (S.E)	Coef (S.E)	Coef (S.E)
가구주성별(남=1)		-0.0981*** (0.0271)	-0.180*** (0.0163)
가구주연령	0.0518** (0.0239)	0.0342*** (0.00328)	0.0297*** (0.00241)
가구주연령2	-0.0131*** (0.00412)	-0.0151*** (0.00313)	-0.0129*** (0.00232)
가구주학력	0.0274*** (0.00795)	0.0914*** (0.00271)	0.0757*** (0.00140)
배우자(유=1)	0.312*** (0.0249)	0.413*** (0.0201)	0.419*** (0.0160)

변수	FEM	REM	OLS
	Coef (S.E)	Coef (S.E)	Coef (S.E)
가구원수	0.0414*** (0.00633)	0.0389*** (0.00550)	-0.00013 (0.00463)
주택소유(소유=1)	0.786*** (0.0124)	0.904*** (0.0112)	1.092*** (0.0103)
거주지역 (서울, 광역시=1)	0.0910*** (0.0235)	0.164*** (0.0152)	0.152*** (0.00911)
경제활동(근로=1)	-0.0246* (0.0139)	-0.0587*** (0.0130)	-0.179*** (0.0129)
연도	0.0595*** (0.00635)	0.135*** (0.00601)	0.377*** (0.00636)
가구 경상소득	0.0142 (0.0237)	0.0263*** (0.00125)	0.00822*** (0.00123)
상수	4.863*** (1.012)	4.271*** (0.0919)	3.128*** (0.0674)
관측치수	56,447	56,447	56,447
R-squared	within=0.1649 between=0.2142 overall = 0.1994	within=0.1609 between=0.4571 overall = 0.3704	R-squared=0.3880 Adj R-squared=0.3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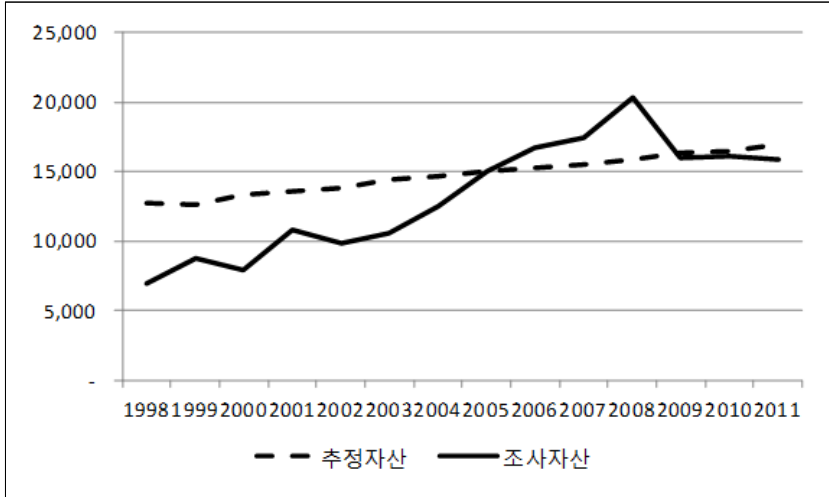
주: 1) *, **, ***는 각각 10%, 50%, 1%에서 유의함.

2) 종속변수는 $\ln(\text{가구순자산})$ 임.

먼저 실제자산과 추정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실제자산의 경우 2008년까지 증가하다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추정자산에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여 추세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실제자산과의 오차를 점차 줄여 가고 있다.

[그림 4-3] 추정자산과 실제자산의 추이 비교

(단위: 만원(경상가))



<표 4-8> 추정자산과 조사자산의 격차

(단위: 만원(경상가))

연도	추정자산(A)	조사자산(B)	자산격차(A-B)	$((A-B)/B)*100$
1998	12,754	7,035	5,719	(81.3)
1999	12,674	8,732	3,942	(45.1)
2000	13,355	7,888	5,467	(69.3)
2001	13,636	10,854	2,782	(25.6)
2002	13,828	9,890	3,938	(39.8)
2003	14,409	10,630	3,779	(35.5)
2004	14,690	12,529	2,160	(17.2)
2005	15,096	15,096	0	(0.0)
2006	15,252	16,770	-1,517	-(9.0)
2007	15,497	17,442	-1,945	-(11.2)
2008	15,870	20,395	-4,525	-(22.2)
2009	16,312	15,988	324	(2.0)
2010	16,543	16,170	373	(2.3)
2011	17,018	15,844	1,174	(7.4)

2010년 기준으로 가구특성별 추정자산과 조사자산을 비교해 보면, 추정 자산이 조사자산보다 평균적으로 2.3%더 높게 추정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6.5% 높게, 남성이 4.3% 적게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농촌의 순 자산이 17.1% 높게, 도시가 12.1% 낮게 추정되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과다추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추정 자산과 조사자산의 차이가 줄어들어 5분위에서는 조사자산보다 적게 추정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2010년 기준 추정자산과 조사자산의 가구특성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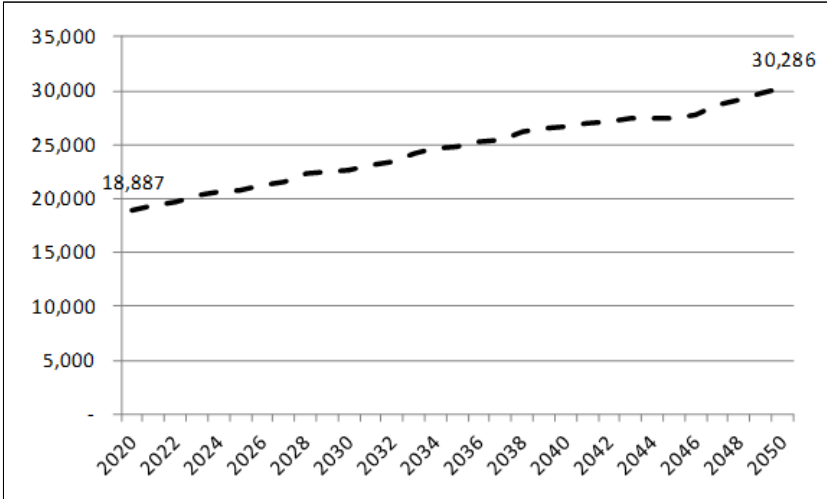
(단위: 만원(경상가))

구분	추정자산	조사자산	자산격차(A-B)	$((A-B)/B)*100$	
전체	16,543	16,170	373	(2.3)	
성별	여성	11,423	9,028	2395	(26.5)
	남성	19,739	20,628	-889	-(4.3)
지역	농촌	15,888	13,571	2317	(17.1)
	도시	17,483	19,886	-2403	-(12.1)
연령	65-69세	15,069	18,572	-3503	-(18.9)
	70-74세	16,312	16,603	-291	-(1.8)
	75-79세	17,734	13,643	4,092	(30.0)
	80세이상	18,845	13,306	5,540	(41.6)
소득분위	1분위	6,860	-365	7,225	(1980.9)
	2분위	11,734	3,760	7,974	(212.1)
	3분위	16,266	8,183	8,083	(98.8)
	4분위	20,561	17,002	3,560	(20.9)
	5분위	27,325	54,669	-27344	-(50.0)

추계된 자산액을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 하면, 2020년에 1억 8,887만원이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3억2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4] 추정된 자산의 추이

(단위: 만원(경상가))



추정된 자산을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높게 나타났으나 이후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 증가로 2050년에는 다소 줄어들어 1.3배의 차이가 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는 농촌보다 2020년에 1.1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50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령대별 순자산은 2020년에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크기가 증가하다 80세 이상에서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2030년부터는 80세 이상의 순자산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분위 대비 5분위의 평균 순자산이 3.6배에 달하며 2050년에는 4.9배로 늘어나 노인의 소득불평등이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순자산: 연도 및 가구특성별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체	18,887	20,816	22,568	24,809	26,690	27,443	30,286
성별							
여성	14,116	15,623	16,932	18,361	19,606	21,171	23,898
남성	21,112	22,645	24,144	26,234	28,143	28,848	31,868
지역							
농촌	18,045	19,851	21,549	23,981	26,269	26,913	29,549
도시	19,859	21,834	23,665	25,749	27,178	28,058	31,133
연령							
65~69	16,515	17,499	18,212	18,897	19,192	17,106	13,661
70~74	19,886	20,557	21,782	23,457	24,339	24,840	22,140
75~79	21,825	24,752	25,587	28,054	30,212	31,502	32,151
80세이상	15,975	21,062	26,498	30,029	33,848	35,931	39,891
소득분위							
1분위	7,983	8,597	9,247	10,150	10,965	11,158	11,667
2분위	14,108	14,732	14,803	15,372	16,115	16,227	17,879
3분위	19,782	21,934	23,736	24,898	25,054	23,573	24,654
4분위	23,697	26,318	28,987	32,372	34,893	36,324	40,399
5분위	28,964	32,542	36,118	41,322	46,643	50,105	56,990
관측치	1,852	2,081	2,223	2,403	2,561	2,427	2,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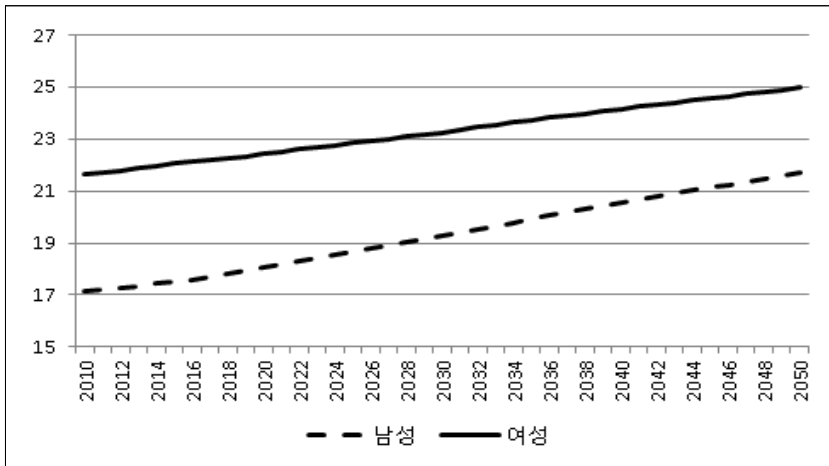
2. 자산 소득환산액 추정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65세 이상 인구의 기대여명을 알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대여명 값으로 통계청의 연령별·성별 중위가정 기대여명 추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소득환산액 추정 시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 사항은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 자산의 경우, 금융자산과 달리 쉽게 유동화 할 수 없고, 거주를 전제로 하여 기존 소유주택을 소규모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매매후 전세로 옮겨가는 방식 혹은 주택연금 등을 통한 부동산 자산의 유동화 등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동화 비율을 고려해서 100%, 75%, 50%로 구분하여 비교하고자 한다.¹⁹⁾

다음으로 추정된 자산을 바탕으로 각 가구주의 기대여명에 따라 매 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소득을 추정하였다. 각 기의 기대여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7.16년, 여성의 기대여명은 21.63년에서 2050년 65세 남성은 21.7년, 여성은 25.0년으로 증가한다.

[그림 4-5] 65세 기준 성별 기대여명

(단위: 세)



주: 본 연구의 연령대별 기대여명은 2010년 기준 연령별, 성별 기대여명에서 매년 1년씩 차감하여 2010년에 추정된 기대여명에 따라 사망하는 것으로, 기대여명이 점차 늘어나는 통계청의 기대여명과 차이가 있음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추정된 자산과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각 기의 65세 가구주가 남은 생존 기간동안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소득은, 2020년에는 1억 8,887만원의 자산을 이용하여 매년 1,576만원을 소득으로 전환

19) 주택연금의 경우 피보증인이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담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금지급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25%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전환하면 32.8만원에 해당하며 이는 2050년까지 59.3만원으로 증가한다. 50%를 적용하면 2020년 65.7만원에서 2050년 118.5만원, 75%를 적용하면 2020년에 98.5만원에서 2050년에 177.8만원, 그리고 100%를 적용하면 131.4만원에서 2050년 237.1만원으로 증가한다.

〈표 4-11〉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월 소득환산 추정액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추정자산		18,887	20,816	22,568	24,809	26,690	27,443	30,286
자산소득		1,576	1,755	1,935	2,158	2,351	2,372	2,845
월소득	25%	32.8	36.6	40.3	45.0	49.0	49.4	59.3
	50%	65.7	73.1	80.6	89.9	98.0	98.8	118.5
	75%	98.5	109.7	120.9	134.9	146.9	148.2	177.8
	100%	131.4	146.3	161.2	179.9	195.9	197.7	237.1

- 주: 1) 금액은 2010년 시점의 현가임.
 2) 자산소득=추정순자산/기대여명
 3) 월평균 소득환산액의 100%, 75%, 50%, 25%는 자산의 현금 유동화율임.
 4) 물가상승률은 제3차 재정추계 가정을 사용함.

성별로 환산소득을 살펴보면, 100%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여성은 2020년 103.0만원에서 2050년 160.8만원으로 증가하지만, 남성은 2020년 144.6만원에서 2050년 256.0만원으로 더 높은 수준의 환산소득을 나타낸다.

거주지별 환산액을 살펴보면, 100% 환산율을 적용할 경우 농촌거주자의 자산소득환산액은 2020년 127.7만원에서 2050년 234.8만원으로, 도시거주자는 2020년에 135.6만원에서 2050년 239.7만원으로 증가한다.

82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표 4-12〉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성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여성	추정자산	14,116	15,623	16,932	18,361	19,606	21,171	23,898	
	자산소득	1,236	1,438	1,609	1,723	1,675	1,680	1,930	
	월 소득	25%	25.8	30.0	33.5	35.9	34.9	35.0	40.2
		50%	51.5	59.9	67.1	71.8	69.8	70.0	80.4
		75%	77.3	89.9	100.6	107.7	104.7	105.0	120.6
100%		103.0	119.8	134.1	143.6	139.6	140.0	160.8	
남성	추정자산	21,112	22,645	24,144	26,234	28,143	28,848	31,868	
	자산소득	1,735	1,867	2,026	2,255	2,490	2,527	3,072	
	월 소득	25%	36.1	38.9	42.2	47.0	51.9	52.6	64.0
		50%	72.3	77.8	84.4	93.9	103.7	105.3	128.0
		75%	108.4	116.7	126.6	140.9	155.6	157.9	192.0
100%		144.6	155.6	168.8	187.9	207.5	210.6	256.0	

〈표 4-13〉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지역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농촌	추정자산	18,045	19,851	21,549	23,981	26,269	26,913	29,549	
	자산소득	1,532	1,684	1,817	2,043	2,322	2,352	2,818	
	월 소득	25%	31.9	35.1	37.9	42.6	48.4	49.0	58.7
		50%	63.8	70.2	75.7	85.1	96.7	98.0	117.4
		75%	95.7	105.3	113.6	127.7	145.1	147.0	176.1
100%		127.7	140.3	151.5	170.3	193.5	196.0	234.8	
도시	추정자산	19,859	21,834	23,665	25,749	27,178	28,058	31,133	
	자산소득	1,627	1,831	2,061	2,289	2,385	2,395	2,877	
	월 소득	25%	33.9	38.1	42.9	47.7	49.7	49.9	59.9
		50%	67.8	76.3	85.9	95.4	99.4	99.8	119.9
		75%	101.7	114.4	128.8	143.1	149.1	149.7	179.8
100%		135.6	152.6	171.8	190.8	198.8	199.6	239.7	

100% 적용률의 연령별 환산액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지만 65~69세는 2020년 81.4만원에서 2030년 86.2만원으로 다소 증가하고 이후 현저하게 줄어들기 시작해 2050년에

는 57.1만원으로 감소한다. 70~74세는 2020년 126.6만원에서 2035년 138.2만원으로 증가한 후 2050년에는 116.5만원으로 감소한다. 75~79세는 2020년 186만원에서 2040년 231만원까지 증가한 후 2050년에는 226만원으로 줄어든다. 80세 이상은 2020년 155만원에서 2050년 396만원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이처럼 연령대별 소득환산액의 추세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대로 연별대별 자산의 추세와 기대여명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순자산은 줄어들지만,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낮아 월 소득환산액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4-14〉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연령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65~69세	순자산	16,515	17,499	18,212	18,897	19,192	17,106	13,661	
	연소득	977	1,015	1,034	1,027	1,007	869	685	
	월 소득	25%	20.3	21.1	21.5	21.4	21.0	18.1	14.3
		50%	40.7	42.3	43.1	42.8	41.9	36.2	28.5
		75%	61.0	63.4	64.6	64.2	62.9	54.3	42.8
100%		81.4	84.6	86.2	85.6	83.9	72.4	57.1	
70~74세	순자산	19,886	20,557	21,782	23,457	24,339	24,840	22,140	
	연소득	1,519	1,518	1,577	1,659	1,644	1,620	1,398	
	월 소득	25%	31.6	31.6	32.8	34.6	34.3	33.7	29.1
		50%	63.3	63.3	65.7	69.1	68.5	67.5	58.3
		75%	94.9	94.9	98.5	103.7	102.8	101.2	87.4
100%		126.6	126.5	131.4	138.2	137.0	135.0	116.5	
75~79세	순자산	21,825	24,752	25,587	28,054	30,212	31,502	32,151	
	연소득	2,235	2,455	2,448	2,625	2,767	2,753	2,715	
	월 소득	25%	47	51	51	55	58	57	57
		50%	93	102	102	109	115	115	113
		75%	140	153	153	164	173	172	170
100%		186	205	204	219	231	229	226	

8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80세 이상	순자산	15,975	21,062	26,498	30,029	33,848	35,931	39,891	
	연소득	1,855	2,603	3,268	3,681	4,143	4,301	4,755	
	월소득	25%	39	54	68	77	86	90	99
		50%	77	108	136	153	173	179	198
		75%	116	163	204	230	259	269	297
100%		155	217	272	307	345	358	396	

자산분위별 100% 적용 소득환산액을 살펴보면,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는 2020년 52만원에서 2045년에 55만원, 2050년에 62만원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2분위에서는 2020년 91만원에서 2050년 118만원, 3분위는 2020년 130만원에서 2050년 203만원, 4분위는 2020년 160만원에서 2050년 274만원, 그리고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에서는 2020년에 226만원에서 2050년에 52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5〉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분위별 월 소득환산 추정액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1 분위	순자산	7,983	8,597	9,247	10,150	10,965	11,158	11,667	
	연소득	624	618	649	691	698	657	740	
	월소득	25%	13	13	14	14	15	14	15
		50%	26	26	27	29	29	27	31
		75%	39	39	41	43	44	41	46
100%		52	52	54	58	58	55	62	
2 분위	순자산	14,108	14,732	14,803	15,372	16,115	16,227	17,879	
	연소득	1,093	1,161	1,176	1,277	1,306	1,237	1,420	
	월소득	25%	23	24	25	27	27	26	30
		50%	46	48	49	53	54	52	59
		75%	68	73	74	80	82	77	89
100%		91	97	98	106	109	103	118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3 년 위	순자산	19,782	21,934	23,736	24,898	25,054	23,573	24,654	
	연소득	1,555	1,664	1,812	1,850	1,938	2,054	2,440	
	월 소 득	25%	32	35	38	39	40	43	51
		50%	65	69	76	77	81	86	102
		75%	97	104	113	116	121	128	152
100%		130	139	151	154	162	171	203	
4 년 위	순자산	23,697	26,318	28,987	32,372	34,893	36,324	40,399	
	연소득	1,915	2,133	2,352	2,605	2,709	2,685	3,290	
	월 소 득	25%	40	44	49	54	56	56	69
		50%	80	89	98	109	113	112	137
		75%	120	133	147	163	169	168	206
100%		160	178	196	217	226	224	274	
5 년 위	순자산	28,964	32,542	36,118	41,322	46,643	50,105	56,990	
	연소득	2,708	3,205	3,689	4,379	5,135	5,242	6,354	
	월 소 득	25%	56	67	77	91	107	109	132
		50%	113	134	154	182	214	218	265
		75%	169	200	231	274	321	328	397
100%		226	267	307	365	428	437	529	

제3절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 추정

1. 추정방법

가. 생애효용 기준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과 자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총 노후소득의 은퇴 후 소득보장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은퇴 후 필요소득 수준을 측정한다. 은퇴 후 가계의 필요소득수준은 은퇴 후 소비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으로 정의하며,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필요소득수

준을 생애효용기준과 최저생계유지 기준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생애효용기준을 바탕으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철인(1998), 안중범·전승훈(2005), 전승훈·강성호·임병인(2009) 등에서 사용된 가계지출함수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가계지출함수는 불확실성 하에서 소비의 동태적 최적화 과정을 고려한 함수형태로 구체적인 형태는 (4)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형에서 기타소득변수는 임시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수준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모형에 포함되었다.²⁰⁾ 그리고 가계소비함수에서 은퇴더미 변수는 은퇴로 인한 충격이 가계소비함수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포함되었다. 은퇴더미 변수로 인해 은퇴자가구와 비은퇴자가구 사이에는 은퇴더미변수 추정치만큼의 수준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은퇴로 인한 충격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낸다.²¹⁾

20)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등 경상소득 이외의 일상적이지 않은 소득을 의미한다.

21) 은퇴 전후 지출수준과 지출구조 등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anks, Blundell and Tanner (1998),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 (2001), Rafeale et al.(2003), Lundberg et al(2003), Hurd and Rohwedder (2003), Haider and Stephens(2004) 등 많은 연구자들은 은퇴 후 가구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Bernheim, Skinner and Weinberg (2001)은 이러한 현상이 전통적인 생애주기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퍼즐(retirement consumption puzzle)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만일 은퇴 후 소비변화를 생애주기가설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1)식을 이용하여 가구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은퇴 후 소비함수를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 Hurd and Rohwedder (2003, 2008), Lunberg, Startz and Stillman (2003) 등 많은 연구는 은퇴 후 소비 감소가 노동관련 지출의 감소 및 가정내 생산(home production)의 증가 등에 의해 설명되며, 은퇴 후 소비감소가 전통적인 생애주기가설 및 향상소득 가설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1)식을 이용하여 가구소비함수를 추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은퇴 전과 은퇴 후 가구의 소비지출 구성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 교통비, 외식비 등이 감소하는 대신 의료비지출 등은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소비함수 추정 목적 상 이러한 가구소비지출 구성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으며, 오직 총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만을 고려하고 있다. 이처럼 총소비지출 규모의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 은퇴더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은퇴 전후 소비지출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begin{aligned}
 \ln \text{소비}_{i,t} = & \alpha + \beta_1 \text{연령}_{i,t} + \beta_2 \text{연령}_{i,t}^2 + \beta_3 \text{성별} + \beta_4 \text{교육연수}_{i,t} \quad (4) \\
 & + \beta_5 \text{배우자유무}_{i,t} + \beta_6 \ln(\text{가구원수})_{i,t} + \beta_7 \text{자가소유}_{i,t} \\
 & + \beta_8 \ln(\text{기타소득}) + \beta_9 \ln(\text{근로 및 자영소득})_{i,t} \\
 & + \beta_{10} \text{지역더미}_{j,i,t} + \beta_{11} \text{은퇴더미}_{i,t} + \epsilon_{i,t}
 \end{aligned}$$

소비함수 추정은 집단 간 추정(between groups estimation)이 사용되었다. 이유는 각 연도별 소득보다는 생애소득수준에 기초하여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집단 간 추정은 분석기간 중 평균자료를 사용하므로, 생애 평균소득에 부합하는 평균적인 소비의 변화를 잘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은퇴 후 소비수준을 추정할 때에도 생애소득수준에 기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함수 추정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4-16〉 가구소비함수 추정결과

구분	가구소비함수	
	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2.742	0.049***
(가구주) 연령	0.028	0.002***
(가구주) 연령자승	0.000	0.000***
(가구주) 교육연수	0.048	0.001***
(가구주) 성별 (남성=1)	-0.108	0.013***
(가구주) 배우자 유무(유=1)	0.074	0.015***
대수 가구원수	0.449	0.012***
주택소유(소유=1)	0.145	0.010***
대수 기타소득	0.062	0.006***
대수 소득	0.107	0.003***
지역더미(광역시도=1)	0.013	0.008
은퇴더미(은퇴 =1)	0.170	0.023***
R^2 within	0.092	
R^2 between	0.643	
R^2 overall	0.509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소비합수 추정을 통해 구한 회귀계수를 이용할 경우 조사기간인 1998~2012년 이외의 소비수준, 특히 2012년 이후 미래소비수준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구주가 사망할 경우,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가구주가 된다고 가정하였다. 둘째, 가구원은 가구주와 배우자 2명만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단, 개인은 기대여명만큼 생존하며, 가구주 혹은 배우자가 기대여명을 넘어설 경우 가구원수가 1명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가구주 및 배우자의 생애평균월소득수준 추정결과를 사용하였다. 넷째, 기타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거주지역, 자가소유여부 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다섯째, 연도별 소비지출수준을 측정 한 후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국민연 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목임금상승율을 사용하였다.

나. 은퇴 후 최저소득수준 추정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은퇴가 구에게 있어 보다 절박한 문제는 은퇴 전 효용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추정한다. 연도별 최저생계비는 2014년 최저생계비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명목임금증가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은퇴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최저생계비의 합계를 2010년 기준 가격으로 현재화 하였다.

2. 은퇴 후 필요소득 및 최저소득 수준

가계소비합수 추정결과를 토대로 은퇴 후 각 연도의 소비수준을 추정 한 후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합산한 결과, 은퇴 후 필요 소득수준 평균은 약 4억 322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은퇴 후 사망시 점까지 평균적으로 약 4억 322만원의 소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2010년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수는 약 81.9만원이다.²²⁾ 본 연구에서 추정된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을 은퇴 후 생존기간을 고려한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가계동향조사상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수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이 가구주 연령 27~59세 가구로 가계동향조사의 노인가구에 비해 소비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현재 추정된 필요소득수준이 생애효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된 소득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추정치는 현실을 상당히 잘 반영하는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1억 9,943만원, 월평균 필요 소득은 약 69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월평균액수 기준으로 볼 때 2010년 기준 노인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22) 이는 2010년 기준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85만 8,747원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50만 4,344원이다.

〈표 4-17〉 은퇴 후 필요소득 추정결과

(단위: 천원)

구분	생애효용 기준		최저생계비기준	
	생애	월평균	생애	월평균
전체가구	403,220	1,531	199,430	688
가구주성별				
남성	415,441	1,560	206,717	707
여성	324,491	1,341	152,480	568
소득분위				
1분위	219,330	840	162,935	554
2분위	283,194	1,065	198,688	635
3분위	348,546	1,236	210,895	687
4분위	349,277	1,290	208,900	695
5분위	399,014	1,454	208,243	709
6분위	407,356	1,543	203,805	704
7분위	411,866	1,594	200,145	705
8분위	451,734	1,762	200,160	710
9분위	488,620	1,906	199,602	717
10분위	606,581	2,366	200,924	721



제5장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충분성

제1절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

제2절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5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충분성 <<

제1절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

1.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

여기에서는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 대비 생애연금급여수준을 국민연금 노후소득충족률로 정의한 후,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충분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소비수준 및 은퇴 후 공적연금 수준이 평균인 가구의 국민연금 노후소득 충족률은 생애효용기준 31.8%이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노후소득 충족률은 35.5%로 측정되었다. 최저생계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이 64.2%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71.8%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추정치가 의미하는 바는 평균적으로 볼 때 기초연금 도입 이후 생애효용 기준으로는 은퇴 후 필요소득의 약 65%, 최저생계기준으로는 은퇴 후 필요소득의 약 30%가 공적연금 이외의 수단에 의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구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낮았다.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이 낮은 것은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은퇴 연령이 빨라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연금 급여수준은 낮지만, 은퇴 후 소

비수준이 남성 가구주 가구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은퇴 후 자산충족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생애효용기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 충족률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반면 최저생계비 기준 자산충족률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았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애효용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생계비 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 받지 않는다.

〈표 5-1〉 은퇴 후 공적연금의 자산 충분성

(단위: %)

구분	생애효용 기준		최저생계비기준	
	국민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체가구	31.8	35.5	64.2	71.8
가구주성별				
남성	31.4	35.0	63.1	70.3
여성	34.9	40.0	74.2	85.1
소득분위	32.6	42.5	43.8	57.1
1분위	32.6	42.5	43.8	57.1
2분위	35.0	42.5	49.9	60.6
3분위	32.2	39.0	53.2	64.4
4분위	34.7	41.2	57.9	68.9
5분위	32.6	38.3	62.5	73.3
6분위	30.9	36.0	61.7	71.9
7분위	33.5	38.5	69.0	79.3
8분위	29.5	29.5	66.5	66.5
9분위	30.9	30.9	75.7	75.7
10분위	29.5	29.5	89.0	89.0

〈표 5-1〉에서는 평균적인 소비수준과 공적연금 자산을 갖고 있는 가구의 공적연금 노후소득 충분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래 〈표 5-2〉에서는 이와 함께 가구의 공적연금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중

을 생애연금자산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볼 때 국민 연금이 최저생계수준 유지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중은 75.5%이고, 기초 연금을 더할 경우 그 비중은 69.8%로 줄어들었다.

가구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가구 중 62.9%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한 공적연금 급여가 최저생계비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 가구에서는 89.8%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인 대부분의 가구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적연금 이외 추가소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구주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낮았다. 소득 기준으로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적연금 급여수준이 최저생계비 보다 낮은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표 5-2〉 공적연금자산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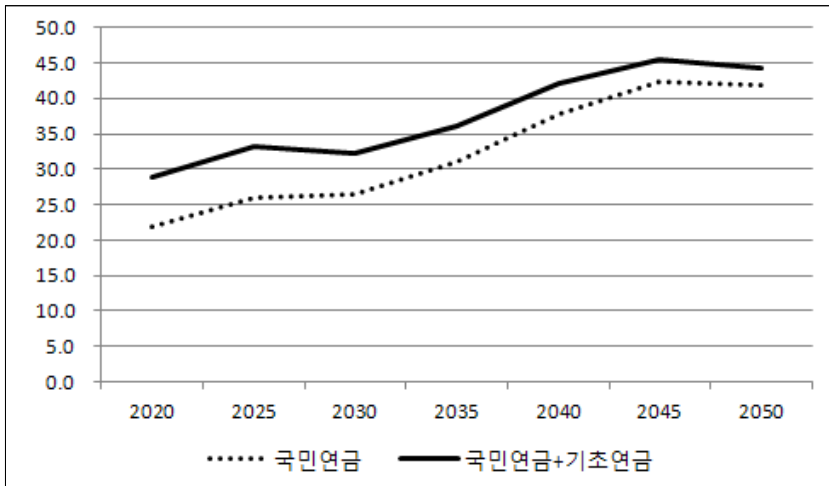
구분	최저생계비기준	
	국민연금	국민연금+기초연금
전체가구	75.5	69.8
가구주성별		
남성	76.6	71.6
여성	68.8	58.3
소득분위		
1분위	94.0	87.2
2분위	84.5	72.9
3분위	84.4	76.3
4분위	84.0	72.4
5분위	80.2	72.2
6분위	30.9	36.0
7분위	33.5	38.5
8분위	29.5	29.5
9분위	30.9	30.9
10분위	29.5	29.5

2. 연도별 분석

[그림 5-1]은 2020년부터 5년 단위로 평균적인 공적연금 자산과 소비 수준을 보이는 가구의 공적연금 자산충분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2020~2045년 기간에 25%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높아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적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평균적인 연금급여 및 소비수준을 보이는 가구는 공적연금을 통해 생애효용기준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의 약 45%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전망할 수 있다.

[그림 5-1]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연도별

(단위: %)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을 연도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것은 아래 <표 5-3>과 같다.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 가구의 경우 연도별로 21.9%에서 35.6%의 자산충족률을 보이고, 50세 미만 가구의 경우 연도별로 35.8%에서 44.3%의 자산충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 가구주 가구의 자산충족률이 26.4%에서 47.7% 수준을, 그리고 여성가구주 가구의 자산충족률은 21.1%에서 41.1%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평균적인 특성을 갖는 가구의 자산충족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공적연금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대체로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대체로 2040년대 후반이 되면서 공적연금의 자산충족률은 남성이 가구주 가구의 경우 40% 중후반 수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30% 후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분위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단,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의 크기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작아졌다.

〈표 5-3〉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연도 및 가구특성별

(단위: %)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국민 연금	전체	21.9	26.1	26.4	31.1	37.9	42.3	41.8
	연령							
	50세미만	-	-	31.0	34.5	37.0	41.2	41.8
	50세이상	21.9	26.1	26.6	28.1	27.9	15.5	-
	성별							
	남성	20.4	23.7	27.5	32.3	40.1	44.6	43.5
	여성	13.7	14.4	17.6	22.3	26.4	31.8	35.3
	소득분위							
	1분위	24.8	26.5	28.6	32.3	33.2	40.9	51.9
	2분위	24.3	28.6	32.9	39.1	44.2	49.3	54.2
	3분위	27.5	29.5	32.9	38.1	48.4	51.2	51.6
	4분위	24.9	30.5	35.8	40.1	47.7	50.4	48.6
	5분위	20.4	27.4	33.9	38.9	45.5	45.8	42.2
	6분위	24.0	26.2	29.6	33.6	40.0	41.7	40.4
	7분위	21.1	25.9	32.1	37.8	41.9	43.1	42.4
	8분위	27.5	26.7	26.0	29.7	35.0	37.4	37.3
9분위	19.3	20.7	27.3	31.3	36.5	40.7	40.4	
10분위	17.1	19.9	21.7	25.3	31.4	36.1	3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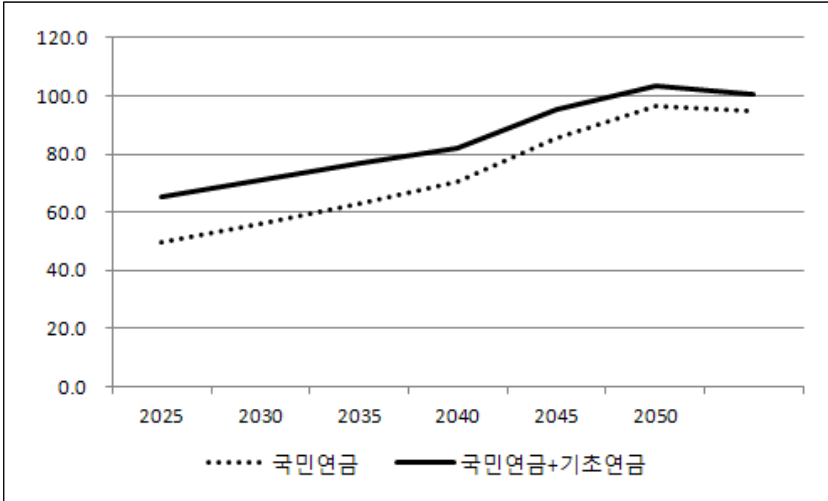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국민 연금 + 기초 연금	전체	28.9	33.2	32.2	36.2	42.1	45.5	44.3
	연령							
	50세미만	-	-	35.8	38.8	40.7	44.3	44.3
	50세이상	28.9	33.2	34.0	35.6	35.4	21.9	-
	성별							
	남성	26.4	29.7	33.2	37.3	44.2	47.7	45.9
	여성	21.6	21.1	23.6	27.8	31.0	35.5	38.4
	소득분위							
	1분위	38.7	39.0	40.2	43.3	43.3	50.8	61.6
	2분위	35.5	39.0	42.5	48.1	52.6	57.2	62.0
	3분위	36.6	39.3	42.4	47.1	56.9	58.5	58.3
	4분위	33.4	39.1	44.8	48.7	55.9	57.6	55.1
	5분위	28.0	35.1	41.7	46.3	52.6	52.2	47.9
	6분위	31.4	33.4	36.4	40.1	46.4	47.7	45.8
	7분위	28.2	33.1	38.6	44.1	48.1	49.1	48.0
	8분위	27.5	26.7	26.0	29.7	35.0	37.4	37.3
9분위	19.3	20.7	27.3	31.3	36.5	40.7	40.4	
10분위	17.1	19.9	21.7	25.3	31.4	36.1	38.3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 등을 고려할 때 은퇴가구에게 있어 보다 절박한 문제는 은퇴 전 효용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최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림 5-2]는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자산충분성을 측정한 결과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2020~2045년 기간에 60% 초반에서 100% 수준으로 증가한 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에 따라 공적연금을 통해 은퇴 후 필요소득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5-2] 최저생계비 기준 공적연금의 자산충분성: 연도별

(단위: %)



최저생계비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을 연도별, 가구특성별로 살펴본 것은 아래 <표 5-4>와 같다. 가구주 연령 50세 이상 가구의 자산충족률은 2045년을 제외할 경우 대체로 60~70% 수준이지만, 가구주 연령 50세 미만 가구의 자산충족률은 90%이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2010년 기준 50세 미만 가구의 경우, 은퇴 후 최저생계에 필요한 소득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으로 거의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5년 이후에는 최저생계비의 100%를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산충족률이 100%에 근접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더라도 1분위와 기초연금이 없는 상위 30% 중 소득 8분위를 제외할 경우, 대체로 공적연금만으로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5-4〉 최저생계비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연도 및 가구특성별

(단위: %)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국민 연금	전체 연령	49.6	55.9	63.2	70.6	85.8	96.4	95.0
	50세미만	-	-	78.2	83.5	84.2	92.7	95.0
	50세이상	49.6	55.9	53.3	50.4	58.8	33.9	-
	성별							
	남성	50.9	57.7	64.7	71.8	89.1	100.0	98.0
	여성	39.2	40.4	48.1	58.6	68.0	82.0	89.8
	소득분위							
	1분위	42.5	43.4	44.4	47.1	48.5	57.2	68.3
	2분위	45.7	51.6	56.4	62.6	71.2	80.2	86.2
	3분위	54.6	56.4	59.7	63.6	83.4	91.8	92.5
	4분위	51.7	61.5	68.9	71.7	85.0	92.7	89.0
	5분위	47.0	61.4	72.7	77.9	90.7	92.3	83.3
	6분위	59.6	63.7	69.3	74.4	86.1	88.8	84.5
	7분위	54.5	65.6	78.5	88.0	94.3	93.8	90.9
8분위	78.0	74.7	70.7	77.4	87.6	90.2	87.0	
9분위	58.6	62.0	79.5	87.2	97.7	104.2	98.0	
10분위	64.4	74.1	78.6	87.8	105.4	115.1	115.3	
국민 연금 + 기초 연금	전체 연령	65.4	71.1	76.9	82.1	95.2	103.6	100.7
	50세미만	-	-	90.3	93.9	92.7	99.5	100.7
	50세이상	65.4	71.1	68.1	63.9	74.6	47.7	-
	성별							
	남성	66.0	72.4	78.0	83.0	98.1	106.8	103.3
	여성	61.7	59.4	64.6	72.9	79.9	91.4	97.6
	소득분위							
	1분위	66.3	63.9	62.5	63.1	63.2	71.0	80.9
	2분위	66.7	70.4	72.8	76.9	84.9	93.2	98.5
	3분위	72.8	75.2	77.0	78.5	98.1	104.9	104.4
	4분위	69.4	78.8	86.1	87.1	99.7	105.9	100.9
	5분위	64.5	78.6	89.6	92.7	104.8	105.1	94.6
	6분위	77.9	81.2	85.3	89.0	99.9	101.4	95.9
	7분위	72.7	83.7	94.5	102.6	108.1	106.8	102.8
8분위	78.0	74.7	70.7	77.4	87.6	90.2	87.0	
9분위	58.6	62.0	79.5	87.2	97.7	104.2	98.0	
10분위	64.4	74.1	78.6	87.8	105.4	115.1	115.3	

제2절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1. 총 노후소득 추정

공적연금과 함께 자산 소득환산액을 고려한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총 노후소득과 충분성의 기준이 되는 생애효용 및 최저생계비를 살펴보면, 2020년 전환율에 따라 71만원, 91만원, 110만원, 그리고 130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고,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각각 110만원, 153만원, 197만원, 그리고 240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반면, 생애효용기준은 2020년 168만원에서 2050년 155만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며 최저생계비는 2020년 78만원에서 2050년 69만원으로 다소 줄어든다.

〈표 5-5〉 65세 이상 총 노후소득과 생애소비 기준: 연도별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환율	25%	71	81	93	105	111	110
	50%	91	105	125	146	152	153
	75%	110	130	157	187	193	197
	100%	130	155	189	228	234	240
생애효용	168	168	162	154	156	161	155
최저생계비	78	79	79	78	75	73	69

주: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는 50만4천원, 2인가구는 85만9천원을 적용함.

총 노후소득을 가구주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2020년에는 소득전환율에 따라 47만원, 56만원, 66만원, 그리고 75만원을 나타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각각 95만원, 132만원, 168만원, 그리고 204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가구주가 남

성인 경우에는 2020년 소득전환율에 따라 75만원, 96만원, 117만원, 139만원으로 여성보다 높은 수준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각각 114만원, 159만원, 203만원, 248만원이 총 노후소득으로 전망되었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농촌거주자의 경우 2020년에 소득전환율에 따라 67만원, 85만원, 103만원, 그리고 121만원을 나타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 각각 109만원, 150만원, 191만원, 그리고 233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도시거주자는 2020년 각각 74만원, 95만원, 116만원, 그리고 136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 각각 112만원, 157만원, 202만원, 그리고 247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내 도시의 총 노후소득이 농촌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6〉 65세 이상 가구주의 성별 총 노후소득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성별	전환율							
여성	25%	47	48	55	66	79	89	95
	50%	56	60	70	88	110	123	132
	75%	66	72	86	111	141	157	168
	100%	75	83	101	133	171	191	204
남성	25%	75	85	98	111	116	115	114
	50%	96	112	132	154	159	156	159
	75%	117	138	166	197	202	197	203
	100%	139	165	201	241	245	238	248

〈표 5-7〉 65세 이상 가구주의 지역별 총 노후소득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지역	전환율							
농촌	25%	67	77	89	102	110	110	109
	50%	85	100	119	140	150	149	150
	75%	103	123	149	178	191	189	191
	100%	121	146	178	217	232	228	233
도시	25%	74	84	96	109	112	111	112
	50%	95	110	131	153	154	152	157
	75%	116	136	165	197	195	192	202
	100%	136	163	200	241	236	232	247

연령별 총 노후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65~69세인 경우 2020년에 소득전환율에 따라 71만원, 91만원, 110만원, 그리고 130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2035년에는 각각 99만원, 115만원, 143만원, 159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 82만원, 97만원, 112만원, 그리고 127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70~74세인 경우 2025년에 소득전환율에 따라 월 80만원, 110만원, 141만원, 그리고 171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40년에 각각 113만원, 148만원, 183만원, 218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 100만원, 130만원, 160만원, 그리고 190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75~79세는 2030년에 전환율에 따라 92만원, 140만원, 189만원, 그리고 237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으며, 2045년에 각각 130만원, 189만원, 247만원, 306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 125만원, 182만원, 240만원, 그리고 297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80세 이상인 경우 2035년에 소득전환율에 따라 112만원, 187만원, 262만원, 그리고 337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으며, 이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 2050년에 105만원, 162만원, 218만원, 그리고 274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이처럼 총 노후소득은 연령대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2050년에는 잔여기대수명 차이에 따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총 노후소득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공적연금의 성숙도와 관련하여 연령대가 낮을수록 공적연금 가입연수 증가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와 소득대체율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효과가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대별 총 노후소득은 2035년경 정점에 달하며, 이후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발생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8〉 65세 이상 가구주의 연령별 총 노후소득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연령	전환율							
65~69세	25%	71	81	93	99	97	94	82
	50%	91	103	115	121	118	113	97
	75%	110	125	137	143	139	131	112
	100%	130	147	159	165	161	150	127
70~74세	25%	-	80	93	106	113	108	100
	50%	-	110	127	141	148	142	130
	75%	-	141	161	176	183	176	160
	100%	-	171	195	211	218	211	190
75~79세	25%	-	-	92	109	123	130	125
	50%	-	-	140	166	182	189	182
	75%	-	-	189	223	241	247	240
	100%	-	-	237	280	300	306	297
80세 이상	25%	-	-	-	112	111	90	105
	50%	-	-	-	187	180	148	162
	75%	-	-	-	262	249	206	218
	100%	-	-	-	337	318	264	274

소득분위별 총 노후소득을 살펴보면, 총 노후소득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2020년에 소득전환율에 따라 월 40만원, 51만원, 60만원, 그리고 69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 73만원, 88만원, 102만원, 그리고 116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2분위에서도 2020년에 소득전환율에 따라 월 55만원, 74만원, 90만원, 그리고 104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으며, 2040년 84만원, 109만원, 134만원, 그리고 157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정점으로 한 이후 감소하여 2050년 83만원, 108만원, 134만원, 그리고 160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3분위에서는 소득전환율에 따라 월 68만원, 89만원, 111만원, 그리고 133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으며, 2035년 102만원, 138만원, 173만원, 그리고 206만원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 99만원, 140만원, 175만원, 그리고 210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4분위에서는 2020년 소득전환율에 따라 85만원, 107만원, 131만원, 그리고 155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고 2040년 130만원, 179만원, 226만원, 274만원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 129만원, 178만원, 230만원, 그리고 282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5분위에서도 소득전환율에 따라 107만원, 134만원, 161만원, 그리고 188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으며, 2040년 172만원, 250만원, 334만원, 그리고 419만원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 169만원, 254만원, 342만원, 그리고 431만원의 총 노후소득을 나타냈다.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전환하더라도 금액이 높지 않다.

〈표 5-9〉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분위별 총 노후소득

(단위: 만원)

구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분위	전환율							
1분위	25%	40	40	47	57	65	71	73
	50%	51	53	63	76	83	86	88
	75%	60	64	77	92	98	100	102
	100%	69	75	90	106	112	113	116
2분위	25%	55	62	72	83	84	83	83
	50%	74	83	97	108	109	107	108
	75%	90	102	118	132	134	131	134
	100%	104	120	140	156	157	155	160
3분위	25%	68	79	91	102	102	101	99
	50%	89	105	124	138	138	138	140
	75%	111	131	156	173	172	170	175
	100%	133	158	186	206	206	201	210
4분위	25%	85	96	110	123	130	130	129
	50%	107	127	150	175	179	176	178
	75%	131	158	190	226	226	223	230
	100%	155	189	231	277	274	271	282
5분위	25%	107	126	144	162	172	170	169
	50%	134	159	191	233	250	246	254
	75%	161	195	243	313	334	327	342
	100%	188	233	299	395	419	410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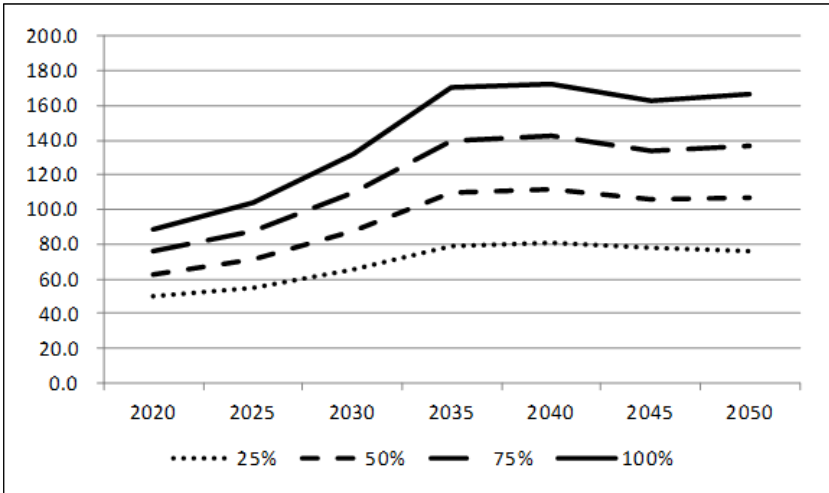
2.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생애효용수준을 기준으로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소득전환율이 25%일 경우 총 노후소득은 생애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49.8%를 충족할 수 있고, 50%인 경우는 62.8%, 75%인 경우는 75.8% 그리고 100%일 경우 88.7%를 공적연금과 자산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충분성은 204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81.1%, 111.7%, 142.2%, 그리고 172.7%를 충족할 수 있으며 이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각각 76.3%, 106.4%, 136.6%, 그리고 166.7%에 달하였

다. 즉, 2035년 이후 50%이상의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생애효용수준의 소득수준을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생애효용 기준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연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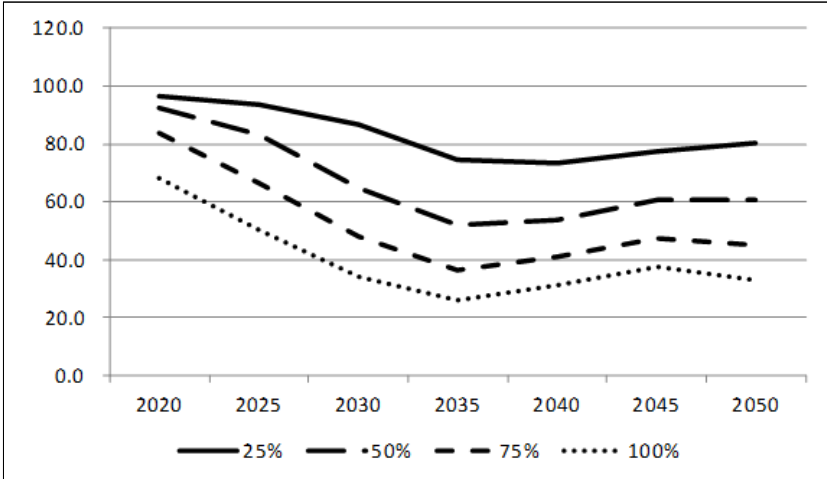
(단위: %)



하지만 매 기에 총 노후소득으로 생애효용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0년 25%의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96.4%, 50%를 적용할 경우 92.4%, 75%를 적용할 경우 84.0% 그리고 100%로 전환할 경우 6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비율은 2035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25%의 경우 74.7%, 50%를 적용할 경우 52.2%, 75%를 적용할 경우 36.7% 그리고 100%로 전환할 경우에도 26.3%가 생애효용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다소 증가하여 2050년에는 25%의 경우 80.2%, 50%를 적용할 경우 60.6%, 75%를 적용할 경우 44.9% 그리고 100%로 전환할 경우에도 33.1%로 나타나 자산을 100% 전환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40%는 생애효용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4]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연도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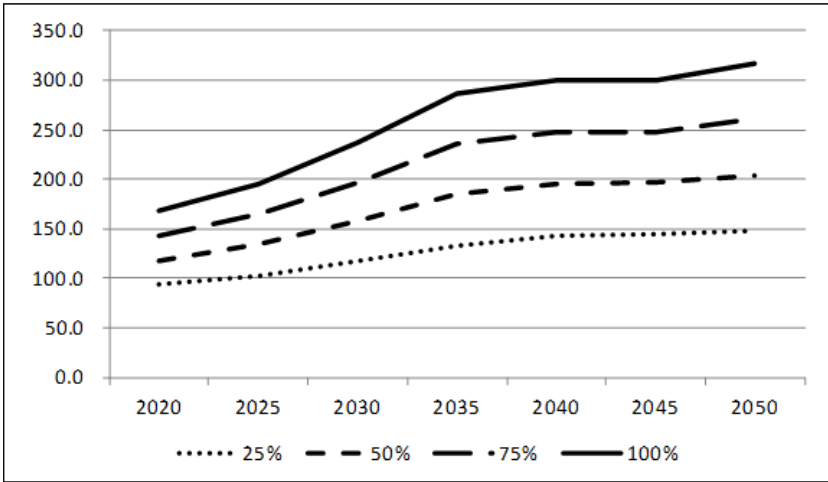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소득전환율이 25%일 경우 총 노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93.5%를 충족할 수 있고, 50%인 경우는 118.5%, 75%인 경우는 143.5% 그리고 100%일 경우 168.5%를 공적연금과 자산을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이러한 충분성은 205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5%의 경우 147.6%, 50%를 적용하면 204.1%, 75%를 적용하면 260.7%, 그리고 100%를 적용하면 317.3%를 충족할 수 있다.

하지만 매 기에 총 노후소득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25%의 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60.8%, 50%를 적용할 경우 34.0%, 75%를 적용할 경우 16.0% 그리고 100%로 전환할 경우 10.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비율은 2050년까지 꾸준히 감소하여 25%의 경우 17.1%, 50%를 적용할 경우 1.6%, 75%를 적용할 경우 0.2% 그리고 100%로 전환할 경우에도 0.2%가 최저생계기준에 미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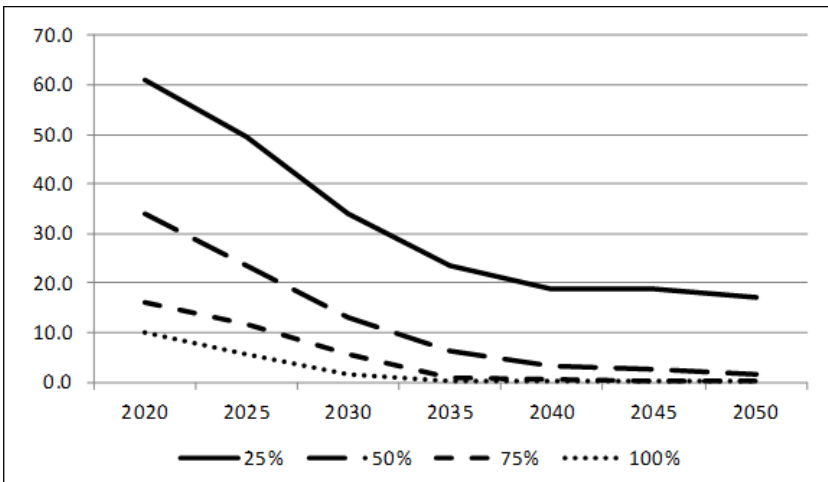
[그림 5-5] 최저생계비 기준 총 노후소득의 충분성: 연도별

(단위: %)



[그림 5-6] 총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연도별

(단위: %)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65세 가구주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공적연금 그리고 생애 전 기간에 걸쳐 축적한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한 자산전환소득의 생애효용기준 자산충족률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에서 2050년까지 49.8%~76.3%, 62.8%~106.4%, 75.8%~136.6%, 그리고 88.7%~166.7%로 장기적으로 공적연금의 성숙도가 높아져 공적연금급여가 증가하고 가구의 순자산이 증가하면서 총 노후소득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생애효용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에서 2050년까지 96.4%~80.2%, 92.4%~60.6%, 84.0%~44.9%, 그리고 68.0%~33.1%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의 가구가 생애효용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생비를 기준으로 한 자산충족률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에서 2050년까지 93.5%~147.6%, 118.5%~204.1%, 143.5%~260.7%, 그리고 168.5%~317.3%로 역시 장기적으로는 전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총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2020년에서 2050년까지 전환율에 따라 60.8%~17.1%, 34.0%~1.6%, 16.0%~0.2%, 그리고 10.0%~0.2%로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2020년경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기초연금이 은퇴 후 필요소득을 충족함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2040년 이후로 오면서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해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2014년 7월 이후 시행된 기초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포괄범위 및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재의 노인세대가 받는 혜택을 크게 하되, 반대로 미래의 노인세대가 받는 혜택은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에서 비롯된다. 미래의 노인세대가 본인들의 은퇴 후 자산수준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면, 이와 같은 제도 설계는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040년 이후에는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미래 노인세대의 급여수준을 줄여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기초연금제도 도입이 타당하다고 잠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다 설득력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즉,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은퇴가구에 대한 공적부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제외한 국민연금가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 또는 다른 소득비례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는 기초연금 급여의 감소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미래 은퇴가구가 국민연금 혹은 다른 특수직역연금 급여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경우 개인은 국민연금 급여수급 직전까지 근로활동과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59~64세까지 근로활동 및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한다고 가정한 것으로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실제 가입기간보다 길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고령 노동시장의 상태를 볼 때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간주될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안정화되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가정이며, 미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충분히 감소할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자료를 반영하여 설정한 결과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정한 자산소득환산액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의 발생을 최소화 하며, 자산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는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매매를 통한 유동화는 높은 거래비용이 발생하며, 적시에 필요한 소득으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같은 공신력있는 금융제도를 통해 유동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의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의 경우, 가입과 운영의 제도적 발전이 미비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가입자가 많지 않다. 따라서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도적 미비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을 사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생애 주된 일자리의 은퇴시점이 매우 빠르고 비자발적 은퇴가 많은 관계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원만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50~70세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생애 주된 일자리가 안정된 상용임금근로자인 경우 정년연장 또는 임금피크제 등으로 고용기간 및 공적연금가입기간을 최대

한 연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기존의 생애 주된 일자리가 임시일용직이나 자영·고용·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동시장 재진입 및 고용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영세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두리누리사업」을 통한 사회보험가입의 확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가입 확대 및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령자의 노동공급유지를 위해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국민연금관리공단(2013).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
-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현 노령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 마련.
- 국민연금연구원(2013). 2013년도 생생통계.
- 강성호·이지은(2010).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 김수완·김순옥·안상훈(2005).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 김수완(2007). 고령화 시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재편 전략과 한국의 선택 - 국가 시장·가족의 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pp. 441~467.
- 김용하(2011).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개혁의 효과성 국제비교, 한국사회정책. 18(2), pp.209~241.
- 류건식·이창우·김동겸(2009).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보험연구원.
- 박덕배(2014). 주택연금 성장의 제약 요인과 시사점-고유형 역모기지 도입 필요, 현안과 과제. 31.
- 방하남(2011).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와 개혁방안, 황해문화. 70, pp.111~136.
- 백은영(2008). 여성노인가계의 걱정 소득대체율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4(2), pp.1~24.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각 연도.
- 보건복지부(2013).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 전망발표.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 석재은(2003). 노령계층의 소득계층별 필요소득수준 연구, 한국인구학. 26(1), pp.79~1113.
- 손병돈(2012). 한국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소득보장효과 분석: 최저생활보장과 적용대상의 포괄성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8, pp.7~28.

- 안종범·전승훈(2003). 은퇴자가구의 소득과 소비. 제4차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_____ (2005). 은퇴자가구의 적정소득대체율, 한국경제연구. 15, pp.5~33.
- 양재진(2011).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 2011년 한국행정학회 동계대회 발표논문.
- 여윤경(1999). 가계 은퇴자산의 충분성, 소비자학연구. 10(4), pp.41~59.
_____ (2002).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pp.83~97.
- 원종욱(2000). 국민연금의 적정소득대체율 분석, 보건복지포럼. pp.32~42.
- 윤석명(2013).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쟁점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pp.28~37.
- 이지영·최현자(2009). 우리나라 은퇴자의 은퇴자금 충분성과 영향요인: 객관성
충분성과 주관적 인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pp.215~230.
- 장지연·신동균·신경아이·혜정(2009). 중·고령자 근로생애사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전승훈·강성호·임병인(2009).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과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충분성, 경제학연구. 57(3), pp.67~100.
- 정경희(2009).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pp.6~14.
- 정유석(2013).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세제 개편방안 연구, 국제
회계연구. 48, pp.287~310.
- 통계청(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_____ (2014). 고령자통계.
-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 World Bank(1994). Averting the Old Age Crisis. Washington D.C:
World Bank.
- World Bank(2005). Old-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World Bank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www.hf.go.kr>

OECD Statistics 홈페이지 stats.oecd.org

